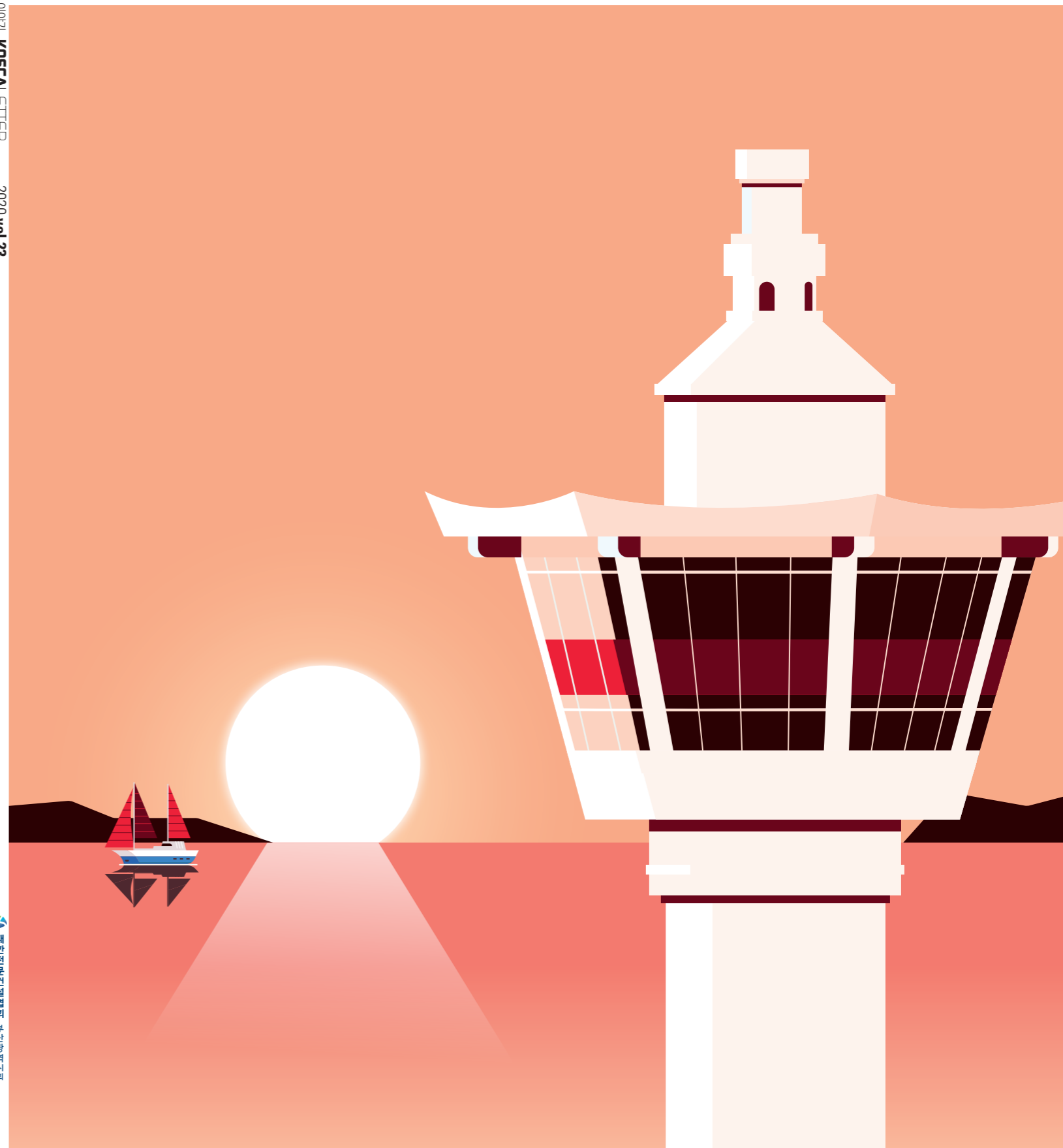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 KOSCA LETTER

2020 vol.23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KOSCA LETTER 2020 vol.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것을 어떻게 알고  
새들은 저 먼 하늘에서 날아올까요?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 불면 함께 흔들리며  
우리는 더불어 봄을 맞이합니다.  
눈부시도록 찬란한 우리의 봄날,  
오롯이 가슴을 열고 맞이합니다.



2020년 Vol. 23

- 발행인 회장 김세원
-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 contents

코스카레터 -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KOSCA+NEWSLETTER 2020 Vol.23

## PART 1

- 04 **신년사**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 회장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 09 **SPECIAL** 틈새 화화
- 10 **SPECIAL**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12 **SPECIAL**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PART 2

- 14 **협회 소식**
- 24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8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선광건설(주)**
- 30 **SPECIAL** 부산의 명소(F1963)
- 32 **SPECIAL**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티베트 포탈라궁)
- 33 **SPECIAL** 틈새 유머



## PART 3

- 34 **전문건설인의 삶** **건설인 제43호** - 한일금속공업사 대표 주병규  
**건설인 제44호** - ㈜동아피앤씨 대표이사 홍중욱
- 38 **건설산업정보 - Section 1**
- 43 **건설산업정보 - Section 2**
- 56 **건설 관련 유관해석 및 판례**
- 59 **SPECIAL** 그것이 알고 싶다(하도급 분쟁 상담소)
- 60 **특별기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 62 **SPECIAL** 틈새 스트레칭
- 63 **SPECIAL** 건강 지키미
- 64 **SPECIAL** 취미의 발견

## PART 4

- 66 **회원사 현황**
- 67 **SPECIAL**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68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 70 **SPECIAL** 2019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 71 **SPECIAL** 중앙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1/4분기 주요 일정 안내
- 72 **SPECIAL** 독자와 함께

### 희망의 새날을 여는 경자년(庚子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 세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 회장

지는 해의 아쉬움과 새날의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12간지 중 첫 번째 해인 '귀의 해'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 어김없이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날의 실수들이 하나, 둘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쌓여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지난해 보다 '성공'이란 단어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년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가 반갑기만 합니다.

분명,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불고 있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 앞에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그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왜소한 나뭇가지에 불과해 보입니다.

2020년 한국경제를 저성장, 저금리의 기조 속에서도 이미 바닥을 치고 천천히 올라서는 단계라 전망하는 일부 경제전문가들도 있지만, 수주물량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등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영하권을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형 SOC사업의 확대, 품의 현실화 등 현실에 맞는 법률개정, 제도적 지원으로 진정한 실물경제 회복을 통해 2020년은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원년이 되길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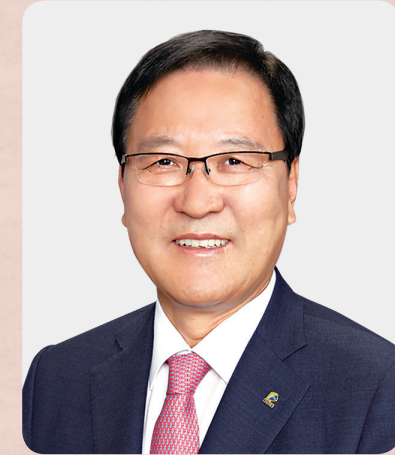
전문건설인 여러분!  
실패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지 않으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변화의 중심에서 당당히 맞서 나아간다면 지난날 허허벌판의 황무지 속에서 건설한국의 위상을 쌓아 올린 것처럼, 우리 전문건설업계도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다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봄계 떠오르는 경자년의 첫 해를 바라보며, 올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업계 발전의 굳건한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김 영 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0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귀의 해인 만큼 전문건설인 모두가 더 크게 발전하고, 더욱 풍요로워지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협회는 더 알찬 사업으로 전문건설인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전문건설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전문과 종합업종 구분을 뛰어넘어 직접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속속 조성되었고,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담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3조 규모의 SOC예산 확장 편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및 5년간 50조원이 투입 될 예정인 도시재생 사업 등 '복지'에서 '경제성장'으로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로 금년에는 건설수주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문건설업계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변화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헤쳐 나가는 것은 전문건설인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과거에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며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샘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꼭 필요하듯 우리 업계가 걸어가는 긴 여정에 협회와 제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중앙회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성장동력 확대 증을 통한 업계 발전의 굳건한 구심점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4월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게 될 총선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우리업계를 정책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회원사의 결집된 힘을 토대로 우리업계의 위상 강화와 권익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우리의 열정과 헌취의 총명한 지혜의 기운이 함께 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위기라는 큰 파도를 넘어 진정한 국가기간산업으로 재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하시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성취되고 늘 건강과 웃음이 활짝 피는 날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는 건설인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0년 풍요와 희망, 지혜를 상징하는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규제 및 가계부채 억제정책, SOC사업 축소,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최저임금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신 전문건설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1만 세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및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여러 가지 나눔을 실천하는 전문건설협회의 소식을 접할 때면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의 노력과 더불어 부산시에서도 지난 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최초 제안으로 대규모 정부 예타면제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화를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에 힘썼으며, 또한, 부산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11월 6일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이(해운대, 수영, 동래) 전면 해제되어 앞으로 부동산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 부산시에서도 정부예산 확보와 함께 더욱 더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해 나아 갈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국비 7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공공부문에 건설 투자국비가 3조 7천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산대개조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건설경기를 살려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과감한 정책혁신을 계속해서 민간수주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사전협상제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민간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얼마 전 성공적으로 치러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토대로 아세안 해외신흥시장 진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수주 확보 기회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랜 건설경기 침체의 터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터널을 부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노력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자년 새해에는 희망을 품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부산 시도 우리 건설인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건설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회원사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우리를 둘러싼 파고는 험난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갈등 속에 시시각각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고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과의 통상과 안보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 평화협력의 길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픈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는 굳건하게 버티고 잘 이겨냈습니다. 온 시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 덕분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도권 투자 편중 등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전문건설인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김세원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8대 시의회는 2020년을 맞아 ‘부산시민’을 믿고 ‘부산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생현장으로 뛰박뛰박 걸어 들어가 부산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도 2020년 을 한해 새로운 도약, 더 큰 활약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역경제에 큰 수레바퀴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자년 새 해가 부푼 기대와 설렘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사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활력이 넘치는 경자년(庚子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통과 번영의 새로운 건설문화를 이끌고 있는 부산전문건설 소식지 ‘코스카레터’ 제2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회원사의 단합을 이끄시는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스카레터’는 부산시회의 다양한 활동을 회원사에 전달하고 유용한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안내, 협회의 주요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홍보,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 및 신공법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900여 회원사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이끄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부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친환경 교육시설 공사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부산상상 & 창의공장’ 등 부산 미래교육의 거점 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각 학교에도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 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 공간이 학교 안에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협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코스카레터’가 건설인 여러분 모두에게 적극적인 소통의 통로가 되어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부산 전문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넘치는 활력으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석 준

부산광역시교육감

## 틈날때 간단하게 배우는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회화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인과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알아보자

### ★ 베트남어 기초 인사말

상황	인사
안녕하세요.	Xin chao 신 짜오
감사합니다	Cam on 감언
안녕히가세요	Tam biet 따뵈
얼마예요?	Bao Nhieuh? 바오 니에우
너무 비싸요	Mac qua 막 콰
맛있어요	Ngon lam 응온 램

### ★ 베트남 사람들과 만났을 때, 참고하세요!

#### TIP. 01

베트남에서는 아랫 사람이 어른들을 만날 때 일반적으로 팔짱을 끼고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예의 있게 인사하는 방법은 양팔을 팔짱 끼듯이 가슴 아래로 모아서 인사한다.

#### TIP. 02

베트남에서는 어깨에 수호신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길을 묻기 위해 어깨를 톡톡 치는 행위나, 어깨동무 하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다.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치는 것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 TIP. 03

베트남에서는 식사 예절을 중요시 한다. 식사하기 전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식사를 먼저 하자고 초대해야 한다. 식사하는 중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접시에 있는 음식을 뒤집지 않는 게 좋다. 베트남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조각을 더는 것을 자주 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손가락을 얹어 놓으면 복이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베트남에서는 반대다.

#### TIP.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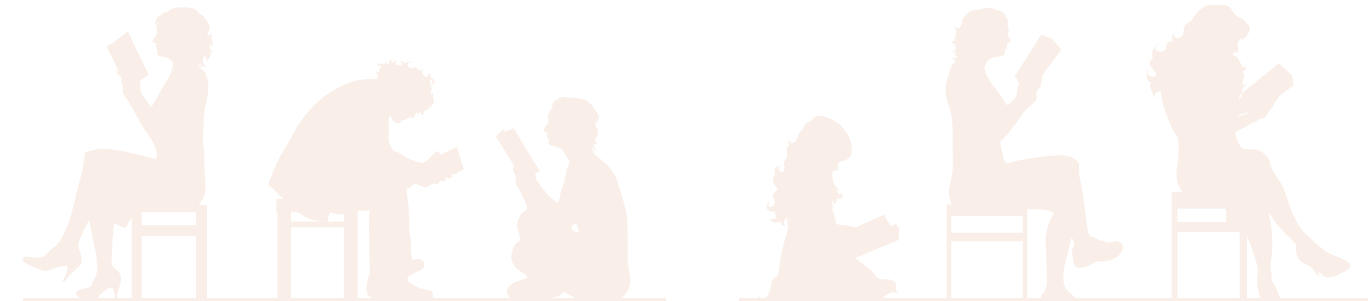
악수를 할 때는 한손으로 단단히 하고 윗사람과 악수하면 두 손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왼손으로 악수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악수는 동성끼리만 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면 안 된다. 여성이 남성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남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면 된다.

# Best Seller BOOK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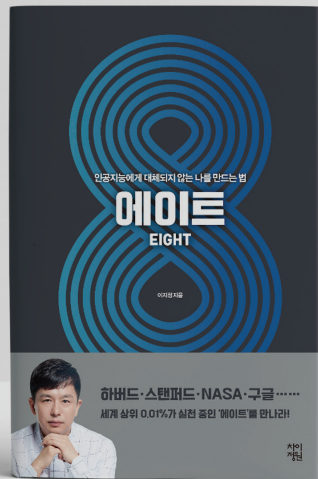
글 최명신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2020년 1월 둘째 주 판매량과 주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위>는 어린이도서 『흔한남매3』로 추천도서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BEST  
1

에이트



이지성 | 차이정원 | 17,000원

《리딩으로 리드하라》와 《생각하는 인문학》으로 인문학 돌풍을 일으켰던 이지성 저자가 5년 만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왔다. 바로 '인공지능'이다. 저자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NASA, 구글 같은 조직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류에게 닥친 새로운 문명에 대해 다르게 준비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경고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BEST  
2

트렌드 코리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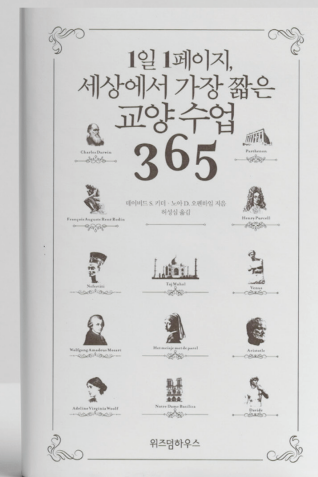


김난도 외 | 미래의창 | 18,000원

2020년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하얀 쥐의 해다. 안팎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소의 힘을 빌려 더 멀리 내다보는 쥐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자 한다. 2020년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하얀 쥐의 해다. 안팎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소의 힘을 빌려 더 멀리 내다보는 쥐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자 한다.

BEST  
4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데이비드 S. 키더 외 | 위즈덤하우스 | 16,000원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는 지성을 자극하여 배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총망라한 책이다.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에 이르는 일곱 분야의 지식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1년 365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65편의 글은 독자가 한 번에 가볍게 읽고 기억하며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분량이다. 늘 옆에 두고 하루에 하나씩 읽는다면 일주일에 일곱 분야의 지식을 두루 탐색할 수 있다.

BEST  
5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글배우 | 강한별 | 13,500원

불안함 공허함 외로움 감정 기복 자존감 등 매년 수천 명의 고민을 마주하며 상담해온 저자의 책은 막연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는 이야기, 지금 당장 불안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이야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용기, 매일 우울하고 불안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 울지마톤즈2: 슈크란 바바

개봉 개봉 2020.01.09. | 감독 강성욱  
출연 출연 이금희, 이태석

“여전히 당신이 그립습니다”

故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를 기념해 제작된 영화 ‘울지마 톤즈2: 슈크란 바바’(감독 강성욱, 이하 울지마 톤즈2)는 모든 것을 바쳐 수단 톤즈에 사랑을 전한 이태석 신부의 발자취와 그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작품. 전편에 미처 담기지 못하고 이태석 신부의 인터뷰와 마지막 모습을 담았다.故 김수환 추기경에게 사제품을 받은 젊은 이태석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울지마 톤즈2’는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되돌아본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태석 신부의 제자로 한국에서 의사가 된 토마스 타반 아콧의 인터뷰도 담았다.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감동을, 그리움을 남긴 이태석 신부의 삶을 스크린 속에 펼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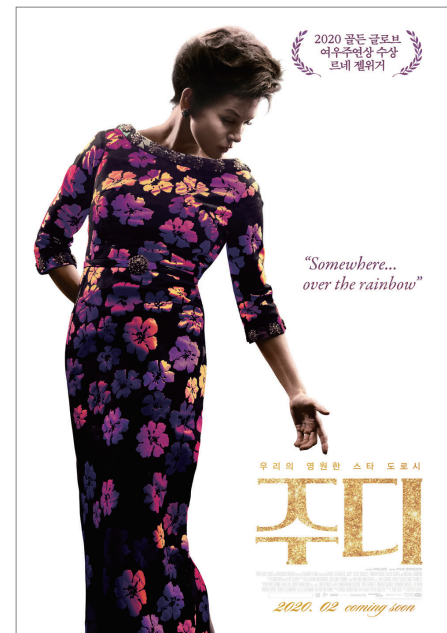


## 리틀 큐

개봉 2020.01.09. | 감독 나영창  
출연 임달화, 양영기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이름 리틀큐

영화 <리틀 큐>는 아시아 3억 부 판매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화되었으며, 중국 개봉 직후에도 박스 오피스 1위를 달성한 작품이다. 독특한 반점을 지닌 채 태어난 매력 덩어리 강아지 리틀 Q. Q는 진 씨 부부의 사랑과, 안내견 훈련사 ‘사이만’의 세심한 훈련을 거쳐 까칠한 시각 장애인 세프 ‘리’에게 매칭된다. 실명으로 인해 성격이 예민해진 ‘리’는 여러 번 Q를 내쫓지만, Q는 충직하게 그의 곁에 머물며 그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러한 충성심에 힘입은 ‘리’는 이제는 반려견이 된 Q와 함께 디저트를 연구하며 세계를 누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리’는 병을 얻게 되고 둘은 이별을 직면하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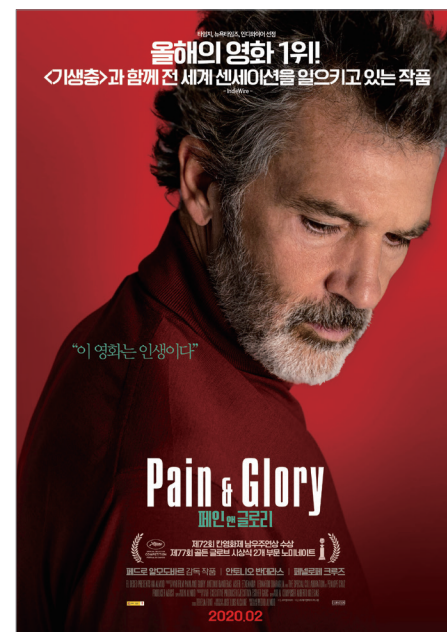


## 주디

개봉 2020.02 개봉예정 | 감독 로퍼트 굴드  
주연 르네 젤위거

영화로 돌아본 거장의 삶

‘주디’는 배우 겸 가수 주디 갈란드 일대기를 다룬 작품으로 영화는 주디 갈란드 생애 마지막 무대인 런던 콘서트 속 모습을 그린다. 많은 관객이 주디 갈란드를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를 부르는 도로시 모습으로 기억하지만, 그는 자신의 화려한 필모그래피에 대비되는 기구했던 삶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영화는 단지 그의 불우한 이면을 낱알이 드러내기보다는 담담한 자세를 유지하며 때로는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더욱이 작중 주디 갈란드 역을 맡은 배우 르네 젤위거가 해당 작품을 통해 제 7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 주디 갈란드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삶을 담아낼 이번 영화에 기대를 더한다.



## 페인 앤 글로리

개봉 2020.02 개봉예정 |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주연 페넬로페 크루즈, 안토니오 반데라스

“이 영화는 인생이다”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킨 영화감독 ‘살바도르 말로’. 그는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활동을 중단한 채 지내고 있다. 그는 32년 만에 자신의 영화를 다시 보게 되고, 미워했던 주연 배우 ‘알베르토’를 오랜만에 찾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조우하게 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는데... 강렬했던 첫사랑, 찬란했던 욕망, 괴로웠던 이별, 가장 솔직한 거장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페인 앤 글로리>는 독특한 색감과 강렬한 연출로 매 작품마다 영화제와 평단, 관객까지 사로잡은 세계적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신작으로 지난 5월에 개최된 제72회 칸영화제에서 <기생충>과 함께 최고 평점을 받으며 황금종려상 유력한 후보로 꼽혔으며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회의 및 행사



01 2019회계연도 제3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0월 11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부산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3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동남권지역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양승오 박사를 초빙하여 “암의 예방, 진단, 치료와 방사선의학”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부산사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양승오 박사에게 ‘감사의 글’과 ‘캐리커처’를 전달했다.



02 2019회계연도 모니터 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0월 21일 회장단 및 감사, 모니터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회계연도 모니터 회의」를 개최했다.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설문조사는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회원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부산전문건설 모니터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와 모니터와의 대화를 통해 전문건설업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동안 설문조사 등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 모니터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03 2019년도 노동업무 설명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0월 25일(14:0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회원사 소속 임·직원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노동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대응방향, 건설업 사회보험 관리방안, 건설업 외국인 고용 및 산업안전·재해 관리방안 등에 대해 우리 협회 중앙회 최정일 전문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이 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교육교재와 강의 동영상을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에 게재해 회원사들이 수시로 활용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04 회원사 고충해결을 위한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실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0월 29일(14: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실시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률·노무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 날 상담에서는 우리 사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전문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쟁 등 노무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 졌다.



05 2019회계연도 제3차 회장단 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7일(10: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2019회계연도 제3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협회 주요일정 계획(안) 등을 보고하고, 부산전문건설인 한마음 음악회 "쌩아울림" 진행상황 등 협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06 2019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2차 임원연석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7일 「2019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2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 및 감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제35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추천(추인)의 건, 부산광역시 2019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포상대상자 추천(추인)의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를 마친 후 개최된 제2차 임원연석회의에서는 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협회 주요일정 계획(안) 등을 보고하고, 부산전문건설인 한마음 음악회 "쌩아올림" 진행상황 등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07 2019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4일(11:00 / 골든뷰뷔페) 2019회계연도에 우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협회의 각종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협회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는 신규회원들을 위해 협회의 역할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와 신고사항 등을 실은 "전문건설업 신규회원 업무편람"책자에 대해 설명(강사: 부산사회 한중석 사무처장)하고, 회원사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건설업을 유지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08 2019회계연도 제1차 업종별 분과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8일(도장, 지붕판금·건축물조립, 포장, 강구조물공사업), 29일(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 양일간 「2019회계연도 제1차 업종별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업종별 회원사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분과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주요 법령 개정, 건설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협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로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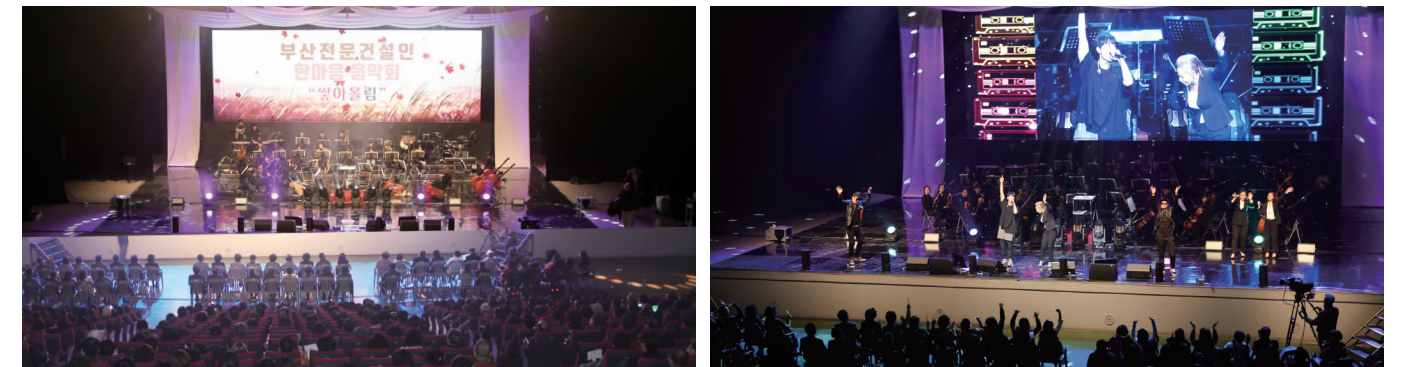


**09 부산전문건설인 한마음 음악회 "쌩아올림"**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9일(18:30 / KBS부산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영운 회장과 부산시 관계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내외 귀빈과 부산의 2,000여 전문건설회사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부산전문건설인 한마음 음악회 "쌩아올림"』행사를 개최했다.

김세원 회장은 "척박한 건설환경 속에서도 부산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우리 부산전문건설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작은 휴식을 가짐으로써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들을 초청하여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음악회는 국민가수 '인순이'와 '김연자', '수와진', '팝페라 휴', '부산아시아콘서트오케스트라'가 출연하여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으며, 행사의 막바지에는 인순이가 히트곡 "아버지"를 통해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국가와 가족을 위해 피땀흘리며 노력하시는 이 시대의 아버지를 열창하며, 음악회에 참석한 모든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후원 명단>**

구분	후원자명단	후원금액
부산사회 회장단 및 감사	회장 김세원(1,000만원) 부회장 유재봉(220만원) 부회장 송유경(300만원) 회원감사 정종원(100만원)	명예회장 김병철(100만원) 부회장 김형겸(330만원) 회원감사 박강일(100만원) 21,500,000원
중앙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장 김영운(2,000만원) 자문위원 유정호(100만원)	자문위원 신현각(300만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유대운(300만원) 27,000,000원
사·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서울시회 이재림 회장(300만원) 외 대구시회 김석 회장, 광주시회 이서길 회장, 대전시회 김양수 회장, 울산시회 김홍무 회장, 강원도회 박용석 회장, 충북도회 우종찬 회장, 세종시·충남도회 이호명 회장,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 경북도회 이정철 회장, 경남도회 김종주 회장, 제주도회 황선태 회장,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정지호 회장, 지방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협의회 이귀식 회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노석순 회장, 강구조물공사업협의회 김희선 회장	20,500,000원
부산사회 임원 및 회원사	(주)제일공사 대표이사 박수근(100만원) (주)연동 대표이사 반백철(100만원) (주)금원건설 대표이사 정영근(100만원) 외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태원, (주)삼강기업 대표이사 김점식, (주)흥산건설산업 대표이사 강용호, 건진개발(주) 대표이사 심수일, (주)화성건설 대표이사 변용규, (주)강호건설 대표이사 강성호, (주)삼성도장 대표이사 이관옥, 신우개발 대표 김문곤	5,742,000원
<b>합 계</b>		<b>74,742,000원</b>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 2019회계연도 제2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5일 「2019회계연도 제2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이사 최상대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이 있었으며, 부산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한 회원사에 대한 인센티브(포상 등) 제공, 업종별 분과회의를 통한 전문건설 기술 개발 관련 논의 및 안전 발굴 등 부산 전문건설 발전을 위한 협의 시간을 가졌다.

김세원 회장은 “업종별, 공종별 작업의 효율적인 방법, 공구의 사용 및 장비의 사용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나아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산학연계 지원 등을 통해 회원사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부산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11 2019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개정건설산업기본법령 강습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3일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실적신고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인터넷 실적신고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교육도 함께 이루어 졌다.

한편 이날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의 동영상 및 교육교재를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교육교재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12 2019회계연도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합동 분과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6일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합동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분과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을 보고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진행 상황 등 업종별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2019년 하반기 대형공사장 현장방문조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김해공항 국내선 주차빌딩 신축공사' 등 지역 내 8개 대형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조리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한편, 부산사회는 공종별 시공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고, 시공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02 하도급홍보세일즈단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6일 부산시 건설행정과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롯데건설(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사회와 부산시 하도급관리팀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건설대기업은 협회와 부산시가 수도권지역에 있는 본사까지 방문해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회장동정**

**0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참석**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11월 29일(14:00 / 부산광역시청 7층 회의실) 개최된 「2019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부산광역시 변성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실장 및 건설관계관, 건설관련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김세원 회장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의 산정 방법인 270만원은 법 개정 당시 2014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월평균 종업원의 급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지속 적용함에 따라 세금과다 납부로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제 지급되는 월 평균임금 반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동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부산시회의 건의를 수용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월 평균금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정부기관에 건의하도록 의결했다.



**02 부산건설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선출**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술 향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부산지역 12개 건설관련 단체가 연합한 부산건설단체총연합회가 12월 3일(11:30 / 롯데호텔부산 3층 필름) 부산지역 건설관련 단체장 및 관련 단체 회원들과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총연합회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박만일 회장이, 부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세원 회장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성석동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 출범식을 계기로 서로 협력해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단체인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부산시의 공공성 강화방침 등 이론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건설단체총연합회 참여 단체>**

-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사)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사)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사회공헌활동**

**01 태풍피해 돕기 성금 지원**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지난 10월 발생한 제18호 태풍(미탁)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경북 및 강원 일원의 지역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금 100만원을 KOSCA 중앙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하였으며, 지원금은 피해 복구비용으로 사용됐다.

**02 2019년 사랑의 연탄나눔 성금 전달 및 연탄배달 봉사활동**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7일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매죽지 마을'과 '감천문화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20,000장(1,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구입한 연탄 중 일부를 직접 배달하는 「2019년 사랑의 연탄배달」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인데 매년 참여해주시는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협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 부산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0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금 1,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부산시교육청과의 교육결연활동의 일환으로 학습환경과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무상급식비로 사용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그동안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메세나 활동을 2011년부터 꾸준히 전개하며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04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소외계층 김장나눔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1일 박재호 국회의원과 함께 부산광역시 남구청을 방문하여 박재범 남구청장에게 소외계층 김장나눔 행사 지원금 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박재호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한 이번 전달식에서 협회 김세원 회장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에 김장나눔 지원금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5 제10회 10,000세대 사랑의 김장 나눔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일(11:00 / 송상현 광장) 개최된 “제10회 10,000세대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에 동참하여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대표이사 김경현)에 김장 나눔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협회 김세원 회장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김장나눔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6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3곳에 생필품 전달 및 마술 재능기부 공연**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2일(09:30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하소연), 성바오로애덕원 바오로아람터(시설장 황석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관장 김종운)” 이상 3곳의 기관에 1,000만원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협회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금전달식에 이어 10:00부터는 협회 회원사인 (주)위드현대 이종덕 대표이사의 마술재능기부 공연인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함께하는 수리수리마수리 매직쇼”가 개최되어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0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지원사업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방문하여 김태석 사하구청장에게 ‘급여자투리 교복지원사업’ 지원금 3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사하구청에서 급여자투리를 모아 관내 소외계층 교복을 지원하는 뜻 깊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회원소식**

**01 전문건설인 산행**

부산사회는 12월 4일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9년 제3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은 영남알프스 산군 중 하나로 역사와 습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밀양 재약산으로서 얼음골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로 이동하여 사자평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회원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며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주지원

01 단가계약공사(1개월 이상) 건강·연금보험료 등 반영 추진

부산시회는 11월 6일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에 건의했다.

그 동안 부산지역 일부 발주기관에서 단가계약공사는 여러 개의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각 현장별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로 관행상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건설업체가 이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회는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공사는 계약의 종류가 단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가 없고, 전체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보험료 반영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부산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02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부산광역시 민선7기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 준수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포기각서 사전 징구, 추가공사 불인정,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갑질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거래질서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 횡포는 건설시장의 한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근절을 위하여 2019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 민선7기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구군청, 공사·공단, 사업소 등에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정별 비율(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적용이 어려울 경우 발주부서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11월 6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공사·공단, 교육청 등 부산지역 80여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한 「부산광역시 민선7기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사회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 등 각종 갑질 횡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03 건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근절 추진

물품·제조·납품·용역으로 둔갑한 건설공사

현행 계약법령에서는 건설공사와 물품·용역의 입찰을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예규에서도 공사와 물품·제조의 원가계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공사를 현장 설치도라는 명목으로 물품 또는 용역에 포함시켜 물품·용역 계약으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전문건설업의 업역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물품·용역으로 원가계산 내역을 구성함에 따라 건설공사 원가계산과 비교시 보험료 등 각종 경비누락,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소 상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은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12월 17일 자재의 구매·납품 등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물품·용역 계약 발주시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물품·용역 계약이 아닌 건설공사 계약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부산지역 130개 주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제도개선

01 국세청장 간담회 건의자료 제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분납 기준 완화 건의

정부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업의 세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및 소득세 분할납부 기준>

납부세액	분할 가능세액	분납기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금액	• 법인세 납부기한 경과 후 일반기업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이내)
2천만원 초과시	납부세액 50% 이하 금액	• 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법률근거

-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 소득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0조

그러나, 4만여 전문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 납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SOC사업 물량 감소와 부동산 규제로 인한 민간공사 물량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중소기업자들이 수주난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건설공사 원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에 의존하는 전문건설업자들의 경영은 IMF 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국세 체납으로 인한 범법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국세(법인세, 소득세 등) 분할 납부 기준금액 하향 및 납부기한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부산시회는 10월 11일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중앙회 경우)를 통해 국세 분납기준 완화와 분납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 분할납부 기준 상향>

납부세액 및 분할납부 가능금액	
현행	상향(안)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시 - 1천만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	•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시 - 5백만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
• 2천만원 초과시 - 납부세액 50% 이하 분할 납부	• 1천만원 초과시 - 납부세액 50% 이하 분할 납부
분납기한	
현행	상향(안)
• 법인세 - 납부기한 경과 후 일반기업 1 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 법인세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소득세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소득세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0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건의사항 제출

부산시회는 10월 17일 중앙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공사 금액을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할 경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문서로서 하수급인에게 통보토록 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조정·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현재 설계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원도급사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 받았을지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전문건설업체는 적정한 하도급공사 대금을 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례로 최근 전문건설업체 7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9.7%에 달하는 208개사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관련 내용을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어 공사 진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공사목적물의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회는 건설시장에서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및 추진 할 계획이다.

03 하도급법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타워크레인 월레비 요구에 따른 비용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 신설 등 건의

부산시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258호)의 시효 만료(2019.12.31.)가 도래함에 따라 부당특약 위법성 심사 내실화와 원사업자의 범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제출하였다.

부산시회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레비 요구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당특약 사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현장설명시 구두로만 공사하는 경우가 잦아 이로 인한 피해를 수급사업자가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사업자가 과도한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며 바다모래 채취가 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04 건설현장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 완화 건의

부산시회는 11월 6일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 구인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예: 고용노동부 워크넷 및 일간신문 등)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또는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을 완화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건설업에서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86억 8천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상시고용인원 대비 1000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부담기초액: 1,048,000원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어 장애인 고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애인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들조차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현장 근무를 꺼려 하거나 장애를 숨기고 취업하여 산재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사에서는 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 구인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고용 부담기초액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공사 확대 추진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호, 2019.12.13.)의 규정에 따라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7.1부터는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대상공사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나,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도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지급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발생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공사에서는 건설업체에게 고스란히 비용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공사 범위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중앙회 경우)에 건의했다.

**06** 건설공사 발주시 나라장터에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게재 의무화 건의

부산시회는 11월 14일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나라장터에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게재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작성

하여 갖춰 두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서는 공공공사는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과 시간·인원부족으로 개별 발주기관을 매번 방문할 수 없어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검토없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에 맞춘 설계,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발주 관행으로 인한 설계누락 및 품의 할증 미반영 등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이윤은 고사하고 적자시공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업체에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라장터(G2B)에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과 함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07**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건설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회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건설사고 최초 신고에 배정된 시간이 다소 촉박함에 따라, 최초사고신고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여 현장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 및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08** 202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개정 건의

공사대금 지급 사실 및 내용 하수급인에 통보 등

부산광역시는 2020년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간에 따른 부산시회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11월 28일 2020년도 적용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개정을 위한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 **건설폐기물 처리 상차비 반영 명확화**
  -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시 건설폐기물 처리 상차에 따른 비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원가계산에 반영

- **공사대금 지급 사실 및 내용 하수급인에 통보**
  - 발주자는 원도급자(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시 대금지급 사실 및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통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확인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 **하도급 계약자료의 정보 공개**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 **하도급 통보시 부당특약 유형 점검 의무화**
  -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계약 내용에 부당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

**09** 조경식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2년 → 1년) 건의

부산시회는 12월 3일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는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를 비롯한 각종 수목식재공사는 타 건설공사와는 달리 생물을 식재하는 공사로서 준공 후 1년 동안 4계절의 기후변화를 모두 겪고도 수목이 고사하지 않은 것은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는 1년이 지나 폭염, 가뭄, 동해 등 이상기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수목 고사까지 하자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하자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을 내세워 일방적인 재식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조경식재 공사 완료 후 1년 동안 4계절의 기후변화를 겪은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는 시공상의 책임이 아닌 이상기후 발생 또는 수목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실에 맞게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10** 총선 관련 정책 건의자료 제출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 및 각 지역별 업종별 현안사항 등을 취합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2월 5일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한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 **시공참여자 대체 제도 도입**
  - 60여 년간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구조상 시공참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더 이상 건설하고 적법한 전문건설업체가 범법자로 물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건설업자에게 1차에 한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는 노무제공자 제도 도입을 건의(중전 “시공참여자 제도” 대체 법안 마련)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적격심사제도 낙찰률 상향**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낙찰하한율이 상향(90% ~ 95%)될 수 있도록 건의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1년)**
  - 단위기간 확대를 통한 건설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성 제고 필요
 

단위기간 확대  
 - [현행] 2주 또는 3개월 → [개선] 1년 단위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안착 및 노동유연성 증가에 따른 중소 전문건설업체 부담 완화
- **건설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개선**
  - 건설노조의 부당노동 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기 노조원의 고용강요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처벌 필요
  -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업무관련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요구 및 수수 행위시 조종사 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 필요

신기술 소개

접이식 안전펜스  
선광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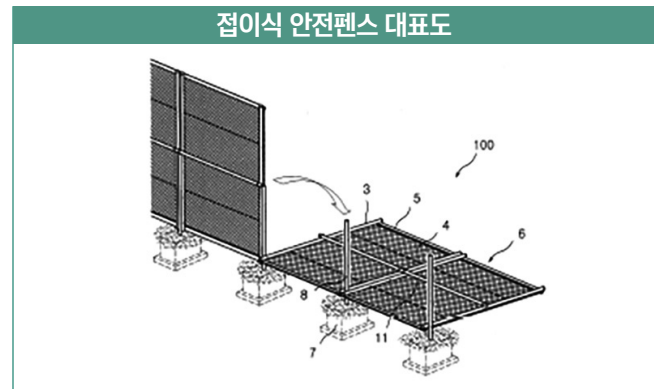
임채병 선광건설(주) 대표이사

- 등록번호: 10-1193577
- 등록일자: 2012년 10월 16일
- 특허권자: 선광건설(주) 대표이사 임채병
- 발명자: 선광건설(주) 대표이사 임채병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기술상 수상(2019.12.11)

»»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체육 시설이나 공원 및 공장의 외곽이나 대지경계지점에 절첩 가능하게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복수의 펜스구조체로 구성되어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하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접이식 안전펜스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펜스구조체를 더욱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짐과 동시에 펜스 구조체의 절첩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짐에 따라, 안전펜스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안전펜스의 절첩작업에도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접이식 안전펜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볼트공과 하나의 힌지공이 뚫린 한 쌍의 포스트, 상기 포스트의 사이에 설치되는 망체, 상기 망체의 상하단에 설치되는 망고정들로 이루어져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복수의 펜스구조체와 지중에 매설된 콘크리트지주에 설치되고, 복수의 볼트공과 하나의 힌지공이 뚫려 있으며, 한 쌍의 포스트 사이에 기립되는 서포트와 포스트의 각 볼트공과 서포트의 각 볼트공에 각각 관통 체결되는 복수의 볼트와 포스트의 힌지공과 서포트의 힌지공에 관통 체결되는 하나의 힌지로 구성되어 볼트의 분리에 따라 펜스구조체가 서포트 상에서 절첩 가능하게 되는 접이식 안전펜스에 있어서, 상기 서포트는 포스트의 중간 높이까지 이르는 길이를 가지도록 구성되고, 상기 펜스구조체의 중간 높이에는 펜스구조체와 함께 이웃하는 일측의 펜스구조체의 중간을 지지하여 보강하는 보강바가 가로 설치되어, 펜스 구조체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보강할 수 있게 됨을 특징으로 한 접이식 안전펜스가 제공된다.



»» 발명배경 및 효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나 공원 및 공장의 외곽이나 대지 경계지점에는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하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펜스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펜스는 지중에 매설된 지주에 일정간격으로 수직 설치되는 복수의 포스트와, 상기 포스트의 사이에 설치되는 망체와, 상기 망체의 상단과 하단을 고정 지지하는 망고정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펜스는 포스트가 기립된 상태로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망체는 물론이고 망고정들과 지면과의 사이에 크고 작은 이물질이 걸려 물의 원활한 배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에도 상기 포스트가 강한 바람에 영향을 받아 전후로 마구 흔들리게 되면서 설치 상태가 견고하지 못하여 안전펜스가 쓰러지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본출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지주에 설치되는 한 쌍의 포스트와, 상기 포스트의 사이에 설치되는 망체와, 상기 망체의 상단과 하단에서 고정 지지하는 망고정들로 구성된 복수의 펜스 구조체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구성된 안전펜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포스트는 콘크리트지주에 설치된 서포트 상에 볼트와 힌지에 의해 결합되어, 볼트의 체결 유무에 따라 힌지의 작용으로 펜스구조체가 이동되어 접철시킬 수 있게 됨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안전펜스가 선출원되었다.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때에는 힌지역활을 하는 힌지는 그대로 두고 볼트만을 분리하면 펜스구조체를 바닥으로 접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상기한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의 접이식 안전펜스는 서포트의 길이가 매우 짧아 펜스구조체의 하중을 제대로 지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펜스구조체의 하중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여 펜스구조체가 일측으로 쳐져 안전펜스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상기 펜스구조체는 다소 긴 길이를 가지고 있으나 중간 부분에는

어떠한 지지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될수록 중간 부분이 일측으로 휘어져 안전펜스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상기한 종래의 접이식 안전펜스는 절첩작업시 작업자 혼자서 펜스 구조체를 지지하면서 볼트를 체결하거나 분리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작업자가 함께 작업해야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절첩작업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 안전펜스의 전체적인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안전펜스의 절첩작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수의 볼트공과 하나의 힌지공이 뚫린 한 쌍의 포스트, 상기 포스트의 사이에 설치되는 망체, 상기 망체의 상하단에 설치되는 망고정들로 이루어져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복수의 펜스구조체와 지중에 매설된 콘크리트지주에 설치되고, 복수의 볼트공과 하나의 힌지공이 뚫려 있으며, 한 쌍의 포스트 사이에 기립되

는 서포트와 포스트의 각 볼트공과 서포트의 각 볼트공에 각각 관통 체결되는 복수의 볼트와 포스트의 힌지공과 서포트의 힌지공에 관통 체결되는 하나의 힌지로 구성되어 볼트의 분리에 따라 펜스구조체가 서포트 상에서 절첩 가능하게 되는 접이식 안전펜스에 있어서, 상기 서포트는 포스트의 중간 높이까지 이르는 길이를 가지도록 구성되고, 상기 펜스구조체의 중간 높이에는 펜스구조체와 함께 이웃하는 일측의 펜스구조체의 중간을 지지하여 보강하는 보강바가 가로 설치되어, 펜스구조체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보강할 수 있게 됨을 특징으로 한 접이식 안전펜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접이식 안전펜스는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 구조를 가지므로 안전펜스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서 사용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절첩작업을 작업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므로 절첩 작업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일반펜스 및 불안정도

■ 일반펜스 설치



■ 일반펜스 사건 사고



사람잡는 인도 파손된 철망 '펜스'  
학교 주변 학생 안전 위협요소 수두룩 개설 절실

00시 00동 마트 옆 펜스가 파손돼 재구실을 못할 정도로 여러 곳이 파손되고 너털너털하게 떨어져 있어 전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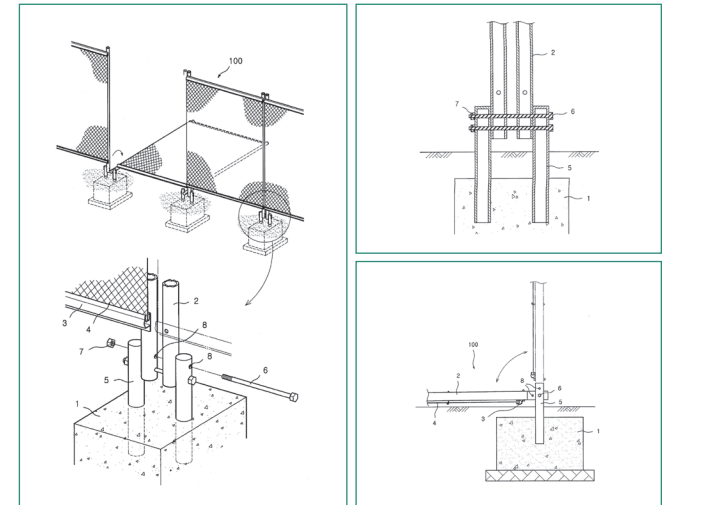
접이식 펜스 구조도

■ 접이식 펜스 설치



낙동강둔치 테니스 코트장

■ 접이식 작동원리 도면





##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공장 F1963

F1963은 철강 산업의 역사가 깃든 고려제강 와이어로프 생산 공장을 개조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50여 년 동안 필요에 따라 몸집을 부풀린 공장 건물이 부산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은 지난 2016년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되면서부터다. 전면의 벽을 허문 뒤 유리와 익스펜디드 메탈을 설치하고 대나무 숲과 생태 정원으로 자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새로 문을 열었다.

글 최명신 사진제공 F1963



줄리안 오피 인 부산전시



F1963 오픈스퀘어



부산국제즉흥춤축제



복순도가



YES24



테라로사

###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재생 건축

F1963은 기존 건물의 형태와 골조를 유지한 채 공간의 사용 용도의 특성에 맞추어 리노베이션된 재생 건축입이다. 재생 건축은 옛것을 활용하되, 옛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들과 시간, 공간 등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들이 창의적으로 재해석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것이며, 재생한 것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병수 건축가의 철학에 따라 리노베이션 되었다.

F1963은 오랜 시간을 거쳐 덧보여지며 지어져, 넓은 평면의 중간 부분을 잘라내어 중정을 만들고, 그 중정을 통해 환기, 채광이 되게 했다. 또 전면(진입부) 측의 벽체들을 제거하고, 유리를 설치하면서, 파란색 익스펜디드 메탈을 덧붙여 확장적 공간으로써의 가능성과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옛 공장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바닥은 그린과 어우러져 조경석과 디딤돌로 재탄생했으며, 공장 지붕을 받치던 나무 트러스는 방문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벤치로 새롭게 태어났다.

### 한 권의 책과 같은 다채로운 공간

로스터리 카페 테라로사, 전통 발효주 브랜드 복순도가, 수제 맥주 브랜드 프라하, 중고 서점 예스24, 국제 갤러리를 입점 시켜 방문객의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미술, 건축, 사진, 디자인, 음악 등 예술 전문 도서관 'F1963도서관'이 개관했다. 도서관 한편에는 전위적인 예술적 실험이 일어났던 1960년대를 짚어볼 수 있는 책 전시도 함께 구성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건물 중앙에 지붕을 걷어내 만든 중정에서는 다양한 야외 이벤트가 벌어지고, 기존의 벽과 기둥, 트러스를 그대로 보존한 석천홀에서는 피카소, 줄리언 오피, 크리스 조던 등 세계 예술 사조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아티스트의 전시도 활발하게 열린다.

#### F1963

#### 운영시간

- F1963 매일 09:00-24:00
- F1963 도서관 화-금 11:00-19:00 토-일 11:00-20:00 / 월, 공휴일 휴관
- 국제갤러리 부산점 화-일 10:00-18:00/ 월 휴무
- 테라로사 매일 09:00-21:00 (라스트 오더 20:30)
- Praha993 월-목 11:30-23:00 / 금 11:30-24:00 / 토 12:00-24:00 / 일 12:00-22:00
- 복순도가 매일 11:30-22:30 (라스트 오더 20:30)

#### 위치 안내 (부산역 출발기준)

- 부산역 광장분수대 앞 정류장에서 40번 시내버스 탑승 → 수영교차로(수영역)에서 54번 시내버스 환승 → '고려제강'정류장 하차
- 부산1호선 부산역 → 연산역에서 부산3호선으로 환승 → 망미역 하차 → 망미역 4번 출구 금호주유소 정류장에서 수영구2번 마을버스 환승 → '산정아파트'정류장 하차

#### 주차시설

- 고려제강본사주차장 P1, P2 ( 매일 09:00 ~ 24:00 )
- F1963 제1주차장 ( 매일 09:00 ~ 24:00 )
- 고려제강본사주차장 P3, P4 ( 주말 09:00 ~ 24:00 )
- F1963 제2주차장 ( 매일 09:00 ~ 20:00 )



티베트의 상징, 달라이라마의 집

## 티베트<sup>Tibet</sup> 포탈라궁



# Potala Palace

중국 인민지폐 현행권인 50위안 지폐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곳. 달라이 라마의 거주지였으며, 티베트의 중심 종교인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 바로 티베트 포탈라궁이다.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이곳은 엄청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포탈라'라는 이름은 관세음보살이 사는 산인 포탈라카 산에서 비롯되었다. 전통적인 단일 건축물로서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며, 동아시아에 있는 어떠한 단일 전통 건축물보다 크다. 포탈라궁의 총 건축면적은 13만㎡로, 전체 부지는 36만㎡이며, 동서의 길이는 360m에 이르고 남북은 270m, 높이는 13층으로 117m에 달한다. 독립 국가로서의 티베트가 경제적인 능력에서는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건축물을 지어 올린 것이다.

포탈라궁의 주된 재료는 흙과 나무로서 종(건축물)의 건축양식을 띄어 중국이나 서양의 화려한 궁전과 달리 외관도 원가 궁전보다는 요새에 가까우며, 티베트에서 성스러운 색으로 여겨지는 붉은 빛으로 칠해져 있는 데다 궁전 뒤로 펼쳐지는 만년설이 덮인 거대한 산맥의 풍광 등등, 궁전이러기보다는 원가 성스러운 성지의 사원 같은 모습을 띄고 있다. 궁은 바깥에서 보이다시 피 붉은색 홍궁(紅宮)과 흰색의 백궁(白宮)으로 나뉘며, 백궁 부분이 생활 공간이고 홍궁은 부처를 위한 공간이다.

포탈라궁 안에는 역대 달라이 라마의 무덤들이 있다. 다만, 달라이 라마 5세 때 지었기 때문에 모든 달라이 라마의 무덤들이 있는 건 아니고 달라이 라마 1세는 시가체의 타쉬룬포 사원, 달라이 라마 2세, 3세, 4세는 드레퓀 사원(라싸)에 안장되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흙으로 봉분을 쌓아 올린 형태는 아니고, 역대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시신은 미이라 처리되어 황금으로 도배된 화려한 탑에 안장된다. 성이기 때문에 원래는 성 주위로 해자가 파이고 물이 고여 있었으나, 앞쪽은 메워져서 광장처럼 되어 버렸고 뒤쪽은 유원지가 되어 버렸다. 폐달을 열심히 밟아서 돌리는 오리배도 있다.

문화대혁명 때는 광기에 찬 홍위병에 의해서 파괴될 뻔했으나, 저우언라이가 사병을 이끌고 그곳을 지키게 해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홍위병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겠지만, 이놈들은 트럭에 나눠타고 진짜로 왔다.

현대에는 티베트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드는 곳이지만, 티베트 독립운동으로 인해 정치적 풍파에 민감한 곳이다. 관광 시 지정된 코스로만 다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래에는 잦은 소요로 인해 아예 방문이 금지되는 일이 다반사다.

글 최명신



### STORY 01 공처가의 항변



공처가가 앞치마를 빨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왔다.

친구: 한심하긴!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으니...

공처가: 말 조심해!

내가 어디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여?  
이거 내 거야, 내 거!



### STORY 02 사는 게 힘들어서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생쥐와 배가 몹시 고프고양이가 마주쳤다.

고양이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늘 너를 기어이 먹어야겠다!”

그러자 생쥐가 고양이 귀에다 입을 대고  
아주 느긋한 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 사는 게 고달파서 쥐약 먹었다!”



##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한일금속공업사 주 병 규 대표



“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그릇에 물을 많이 부으면  
넘쳐버리잖아요.”

한일금속공업사 주병규 대표(74)는 자신의 본 모습과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분수란 단순히 안분지족(安分知足)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가 더해진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힘써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 지향하는 바이기에. 다시 말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노력을 통해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바로 이게 주 대표의 ‘분수론’이다.

사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라 할 만하다.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중학교까지 마친 그는 대도시 부산으로 올라왔다. 동아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군(학사장교) 전역 후 선화여상 교사 생활을 하다 당시 굴지의 대기업인 동명목재에 입사했다.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산은행과 당좌거래를 했죠. 돈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착실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깝싸. 동명목재가 부도나면서 그는 대기업인 롯데와 지역업체인 한일철강 등을 전전해야 했다. 하지만 수평 이동이 아

니었다. 동명목재에서 대리(계장), 롯데에서 과장을, 그리고 한일철강에서 임원인 상무로 승진했던 거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직급을 한 단계씩 올렸다는 사실에서 그의 강한 도전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한일철강마저 비운의 부도를 맞으면서 마침내 그는 1985년 1월 금속 구조물업체인 한일금속공업을 설립하면서 경영자의 길에 들어섰다. “한일철강에 있을 때 철골공사에 큰 관심을 가졌죠. 돈 관리는 자신 있었기에 과감하게 건삶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중앙동 신용금고 신축 건물 철물공사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전문건설업을 시작한 그에게 큰 행운이 따라왔다. 부산 도약의 획기적 전환점인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지하철 이전의 부산은 전국 최악의 도로체계로 인해 ‘교통지옥’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러니 도시철도는 질식 상태에 신음하던 부산을 구해준 ‘수호천사’였고, 주 대표도 당당히 그 일익을 담당했다.

공사권을 따내려 서울의 건설 대기업들이 우르르 내려오는 바람에 지역업체들도 하도급을 맡아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시절이었다. 그때 주 대표는 동아건설의 범내골 로터리 구간 철물공사를 따냈다. 부산에서는 처음 해보는 난공사라 엄청난 고역이었다. 무려 20m나 땅을 파 내려간 상태에서 2m 간격으로 철물 에이치빔으로 버팀목을 세워야 하는 작업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공사’였다.

“2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습니다. 추락과 감전 등 안전사고로 희생자가 속출했더랬죠.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때만 해도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관공서와 경찰에게 불러 다니느라 현장 감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특히 큰 비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지반이 약해져 흩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에이치빔이 엇가락처럼 휘어버리기 일쑤예요. 새벽에 나가 비를 맞아가며 다시 세우느라 비지땀을 흘렸던 기억이 선합니다.”

주 대표는 이후 삼성물산의 연산동과 남산동 구간 공사에도 참여하는 등 1호선 철물공사를 거의 모두 맡아 시행했다.

화제를 돌려 요즘 사정이 어떠냐고 묻자 그는 “3, 4년 전부터 일감이 많이 줄어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파트 경기가 직격탄을 맞아 근근이 유지하는 상태란다. 지금 무리를 해서 덤벼서는 안 된다는 게 주 대표의 판단이자, ‘분수론’이기도 하다. 수주 물량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는 실탄(현금)을 확보한 채 재도약을 기다리며 한껏 몸을 웅크린 상태다.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젊은이들이 용접이나 철물공사를 아예 하지 않으려 해 큰일입니다. 새로운 인력을 길러낼 기술 전문 교육시스템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인력확보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해요.”

부산의 경우 시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2013년 건설기술교육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던 하나 업계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과목이 적고 연수 기간도 짧은 데다 인원수도 모자라고요. 배워서 나와봤자 보조 인력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숙련공들은 은퇴하고 있고 이들을 대체할 인력은 모자라니 세대교체가 안 되는 형국입니다.”

주 대표는 정부 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 다 해당 업체가 해결해야 공사를 허가해주겠다고 팔짱을 끼는 일이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주 대표는 ‘분수론’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이지 않다. 그의 사무실에 내걸린 ‘바람직한 자세’에는 긍정, 헌신, 겸허, 수용, 협조 그리고 감사의 자세가 깨알처럼 적혀 있다. 그리고 책상에 가득 쌓인 서류 몽치들. 그가 일흔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젊어 보이는 까닭을 알 만하다.

글 · 최원열



## 끊임없는 성찰로 부지런히 달려온 건삶인 (주)동아피앤씨 **홍종욱** 대표이사



“  
신의와 성실,  
그리고  
기술력을 갖춰야 합니다  
”

첫인상이 예사롭지 않다. 형형한 눈길, 터프한 모습이 영락없는 ‘경상도 사나이’다. 아니 털털하다고 해야 하나. 여하튼 인터뷰에 임하는 자세가 시원시원하다.

홍종욱(64) (주)동아피앤씨 대표. 페인트 판매와 공사를 평생의 업으로 삼는 건삶인이다. 경남 거창이 본적인 그는 사실 부산 토박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본적을 고치지 않았다. 왜? 선친의 유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님께서 항상 ‘고향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지금도 거창에 당신께서 남기신 땅과 뒷산, 집터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근본을 잊지 말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홍 대표는 중앙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1982년 국내 굴지의 조광페인트 영업부에 입사했다. 도장공사부에 5, 6년간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관리기법을 익히고,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당시 그는 평사원으로서 하

기 힘든 대단한 일을 해냈다. 회사에서 페인트 홍보 차원에서 도장 공사업을 시작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자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반발했듯이, 중소 도장업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이를 냉정하게 바라본 그는 직접 나서 공사업 폐지를 강력히 건의했고, 결국 그의 뜻대로 사측이 따라줬다고 한다. 능력을 알아본 선배 추천으로 그는 동명목재 자리에 있던 로얄페인트로 자리를 옮겨 도장공사, 중방식 산업팁에서 일하다 1990년 동아상사를 만들어 페인트 도료 판매업에 진출했고, 1997년 도장 면허를 취득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도장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 피앤씨를 설립했다.

그는 왜 페인트 판매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사 분야에까지 손을 뻗었을까.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힘들지만, 메이저업체들이 답합해 페인트를 공동구매한 뒤, 페인트 대리점에게는 거의 택배 수준의 영업을 시키더군요. 그러니 이윤이 쪼그라들 수밖에요. 도저히 그들의 갑질을 견디기 힘들었죠. 이런 횡포가 어디 페인트뿐이겠습니까. 유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해요.”

페인트공사 분야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 전문건설업이라는 게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이고 영세업체들이기에 하도급을 통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니 수지 타산이 갈수록 떨어질밖에. 한마디로 ‘설립은 쉽지만, 청산은 힘들다’는 거다.

홍 대표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갔다. 먼저 인력 수급 상황. 신규 진입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인력은 모두 고령화되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결책은 물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노조 등의 극심한 반대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제조업과 달리 전문건설업의 경우 허가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대부분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사팀장이 데리고 와서 일하면 회사가 노임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단다.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외국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예전 못 살던 시절, 독일 탄광과 사우디 사막에 산 노임을 받고 인력을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홍 대표는 두 번째 문제점을 꺼내 든다. 바로 도장 공법 얘기가.

페인트공사업도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그는 낡은 아파트와 건물을 재단장하는 보수 도장 쪽으로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그런데 강력한 약제가 튀어나왔다. 환경법상 2021년부터 도장할 때 스프레이가 아닌 롤러를 사용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기 때문이다. 분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업체들은 생존 위기에 봉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스프레이를 계속 사용하면 분진망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 엄청난 비계설치비를 감당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롤러를 사용하자니 인건비가 크게 늘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할 판입니다.”

사실 고층 아파트 벽을 롤러로 문지르면서 칠하고 내려오는 그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일당 40만 원을 줘도 안 될 판입니다. 스프레이로 뿌리면 3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홍 대표는 이 역시 해결책은 외국인 인력 도입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이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신의와 성실, 그리고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페인트는 첨단제품인 동시에 반제품이라. “작업자가 잘 써야 페인트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선박, 자동차, 항공기,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공부법은 공자의 제자 증삼이 실천했다는 ‘일일삼성(一日三省)’으로 요약된다. 항상 깨어 있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하며, 기업 윤리를 명심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루 3번 꾸준히 자기성찰을 해보니 돈이 저절로 들어오더라고요.”

글 · 최원열



\*\*\*  
IMPORTA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01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도급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방계약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01 주요 내용**

- 공기연장시 실비산정 대상에 하수급인 지출 비용 포함
- 계약담당자에게 적절한 원가산정 의무 부여
  - 중·소규모 공사에 대규모 공사 투입 관급자재 단가 적용 지양
-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추가 명시
- 설계변경시 하도급자에게 통보 의무 신설
  -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 통보
- 공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

**02 시행일:** 2019.10.8.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IMPORTANT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02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1호(2019. 6. 7.)】

**01 주요 내용**

- 공기연장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 하도록 의무화(제16조)
  - (현행) 설계변경 → (개정) 설계변경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어 비용(관리비 등)이 증가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신청 가능(제16조의2)

**02 시행일:** 2020.5.27.부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시행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공포 안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9.10.31.)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6620호(2019.11.26)】

**01 주요 내용**

-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법제화(제7조의3)
  - 발주자에게 건설근로자 임금의 구분지급 및 내역 확인 의무 부과
  -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
    - ※ 법 시행 후 입찰 공고분부터
-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 도입(제7조의4,5)
  -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 관리
    - ※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21.5.27.)
- 전자카드제 도입(제13조)
  - 원도급사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 부여
    -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2020.11.27.)
- 발주자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제한적 도입(제13조의2)
  - 원도급사 파산, 발주자 직접 납부 합의시
    - ※ 법 시행 후 입찰 공고분부터
-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제21조)
  - 퇴직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 → 5년) 연장
-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확대 (제14조)
  - 납부월수 12개월 미만 피공제자가 사망·65세 이상인 경우도 지급 추가
    - ※ 퇴직공제 최초 시행 시기(1998.1.)까지 소급 적용
- 임금 구분 지급·확인제 및 전자카드 도입 관련 법 위반시 과태료<sup>1)</sup>처분(제26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02 시행일:** 2020.5.27.부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우리 협회가 기획재정부에 불합리한 규제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개정 【법률 제17578호(2019.11.26)】

- 01 주요 내용**
-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 (제5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신설)
  -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안전 등 확보를 위한 적정 금액 반영 (제8조2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 (제10조제3항 신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제19조 개정)
  -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 (제28조제1항제1의2 신설)

**02 시행일:** 2020.5.27.부터(단, 제19조는 2020.2.27.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 국가계약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05

국도교통부에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제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625호(2019.11.26)】

- 01 주요 내용**
-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하여야 함(제22조의2 제1항 개정)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9조 제3호의3 신설)
  -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제22조의2 제2항 신설)
  -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함(제22조의2 제5항 신설)

**02 시행일:** 2020.11.27.부터(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안내

국도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도교통부 고시 제2019-769호(2019.12.16)】

- 01 주요 내용**
- **건설공사 참여자: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 신고(제56조)**
    - 건설사고\*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 신고.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즉시 보고
    - 신고내용: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경위, 피해사항, 공사명 등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필요 부상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 ※ 미통보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 건설사고 통보 받은 후 24시간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제57조)
  - **건설사고 신고 제출방법 명시(제59조)**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http://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 또는 전화팩스 활용

**02 시행일:** 2019.12.16.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또는 공지사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7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호(2019.12.13)】

- 01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 확대(제3조)**
    - (현행)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개정) 2천만원 이상
  -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 현행화(제11조)**
    - (현행) 월 1회 → (개정) 월 2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별표2)**
    -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 소요비용

**02 시행일:** 2019.12.13.부터(단, 제3조: 2020.7.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또는 공지사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0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5호(2019.12.18)]
  - 전자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설계서 교부 의무화(제4장제10조제3항)
  - 선금지급 기준 개선(제12장제34조제10항)
    - 공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선금 지급 금지조항 삭제
    -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의무조항 삭제
  - 공기연장으로 인한 인력투입계획 조정 방법 개선(제16장제73조제2항)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조정토록 명문화
  - **시행일:** 2019.12.18.부터
- 02 예정가격 작성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4호(2019.12.18)]
  - 일식단가 사용 금지 및 각종 법정부담금 반영 근거 마련(제2조, 제19조)
  - **시행일:** 2019.12.18.부터
- 0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4호(2019.12.18)]
  - 신인도 항목 추가 및 제외시 기재부장관과 협의토록 개선(제7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등(별표 2,3)
    - '환산재해율' →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 등
  - **시행일:** 2020.3.18.부터 시행. 단, [별표2,3]의 경우 2020.7.1.부터 시행
- 04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3호(2019.12.18)]
  - 간이중심제(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도입
  - **시행일:** 2019.12.18.부터
- 05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0호(2019.12.18)]
  -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금지(제11제3항)
  - 30일 미만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 제출 의무화 폐지(제17조제1항)
  - 최소 공사 착공 준비기간 도입(제17조제1항)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 **시행일:** 2020.3.18.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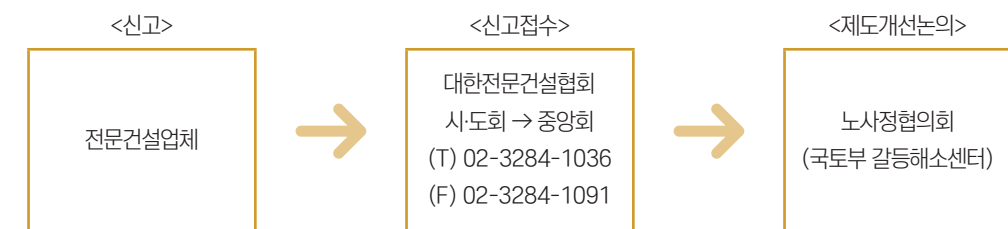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사·통첩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노사정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해소센터 신고 및  
활용 방안 안내

우리 협회는 지난 2019.6.17.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함께 건설산업 생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식을 개최하고 약정문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부당금품 요구 및 지급행위, 공사방해행위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노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시 회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신고 절차 및 방법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IMPORTANT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안내

02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했다라도 분사 기준을 적용 받으며, 이에 따른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이면서 계약서에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됐거나 도급(하도급) 산출 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반영돼 있어야 한다. 분리 적용을 하지 않으면, 현장단위별로 8일 미만 근로자도 신고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분리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시회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반드시 선행(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 별개)되어야 함을 알리고, 미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분리적용 방법 등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안내**

03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 → “공사 현장별 보증”으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을 개정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방법을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공사 현장별 보증”으로 개정하여 2019.6.19.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동 제도 및 주요 질의응답에 관한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행정업무 간소화 및 복잡한 보증절차 단축을 위해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공사 현장별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증하고, 보증채권자로 확정된 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사고 발생시 보상하는 제도
  - 건설업자는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현장별 보증서 제출
  - 기계대여업자는 기계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

**02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

- 원도급·하도급 공사 모두 현장별 보증의 대상
-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별(개별) 보증 가능
  -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5개월 이내
  -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0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04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
-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주요 질의응답(FAQ)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채용절차법 주요 변경내용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7.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채용강요 등의 금지(법 제4조의2)**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지
  - 채용에 관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수 금지
-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2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

-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 금지

**구직자의 개인정보\***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불법 타워크레인 사용 배제 및 신고 안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하여 3톤 미만(무인) 타워크레인을 중심으로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장비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부산시회에서는 회원사에서 불법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 의심 장비가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3471-4911)로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도시가스배관 설치 건축물 철거시 신고제도 안내**

건축물 철거 작업시 도시가스배관 폐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시행하면 도시가스배관 파손으로 인한 가스 누출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다. 부산시회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대규모 공급중단, 화재, 인명 및 재산상의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사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였다.

**01 건축물 공사 신고제도**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고 하여야 함

※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06

도시가스배관  
설치 건축물 철거시  
신고제도 안내

- 02 신고대상**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공사를 하려는 자
- 03 신고방법**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
    - 유선전화: 1644-0001
    - 인터넷: www.eocs.or.kr
    - 모바일 앱: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앱
- 04 위반시 제재사항**
  - 미신고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조치 미시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최근 개정 하도급법령 및  
심결례 안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사업자 등의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예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 법령 및 관련 위반사례 등을 반영한 교육자료 배포 협조요청이 있어 관련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최근 주요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및 기준 구체화
  -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항목 추가
  - 보복조치의 금지행위 항목 추가
  - 3배 손해배상 책임 항목 추가
  - 단순 기술유출 위법행위 추가
  - 기술탈취 행위 조사시효 연장
  - 서면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 0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최근 심결례(부산사무소)**
  -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
  - (주)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하도급
  - (주)협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
  -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건설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판례 및 유의사항 안내

외담대(B2B) 보증금 지급 관련 법원 판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로 대금을 지급받는 건설현장에서 대금미수령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원사(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원의 판결 사례가 있어 부산사회는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01 판결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고 (전문건설업체)	원도급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로 하도급대금을 매월 수령하던 중 원도급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대금미수령 발생,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 보증금 지급을 청구
피고 (건설공제조합)	보증약관에 따라 '외담대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에 도래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
재판 (서울고등법원)	(판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

※ 보증기관의 불합리한 약관(판례 관련)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5.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채무**

02 판결요지

- 원도급자가 채무불이행(기성대금지급기일 도과) 상태에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에 도래한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판례 인용,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도 동일)
- 원·하도급자 간 외담대의 지급기한 연장 효력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경우, 외담대 상환 만기일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변경일로 볼 수 없음
-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대출기관과 하수급인 간의 금전대차 계약에 불과하므로 약관상 어음과 동일한 적용에 신중할 필요

03 회원사 유의사항

- 하도급계약(1천만원 이상 공사) 후 회원사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필히 확인(원도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의무)
  - 보증기관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사실을 키스콘(키스콘 신고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별 합리적 보증기간(보증 종료일)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거절 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 보증종료일은 통상 계약이행기일(준공일)로 설정되며,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준공일 +90일까지 가산 적용



08

건설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판례 및 유의사항 안내

- 따라서, 준공금을 90일 이상의 어음(또는 외담대)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어음만기일(또는 상환일)이 보증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원도급자에게 보증종료일을 벗어난 기간만큼의 추가 보증을 반드시 요구
- 공기연장, 공사대금 증액 등 하도급계약 변경 시, 원도급자 및 보증기관에 보증기간 연장, 보증금액 한도 등 추가 보증을 요구
- 보증약관 상 채권자(하도급자)의 통지의무, 보증금 청구절차 등을 숙지하여 보증금 청구 시 불합리한 약관 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IMPORTANT**  
2020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0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01 운영기간: 2019.12.2. ~ 2020.1.23.
- 0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T: 051-460-1046, F: 051-460-1004)
- 03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 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10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사전 안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조원(500곳)을 투자하여 낙후된 근린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중 하나로, 주택개량,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이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집수리사업,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공원 확충 등 전문건설업의 시공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공사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도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의 주관사로 참여하여 회원사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국토부와 LH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지자체에서도 대거 참여할 예정에 있어, 부산사회는 회원사에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사전 안내

- 01 행사명: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 02 기간: 2020.5.13.(수)~16.(토)
- 03 장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인근(문화비축기지 등 예정)
- 04 주최: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단), 서울특별시(도시재생실), 문화일보
- 05 주관사: 우리협회, LH, 주택보증,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엔지니어링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스마트팜협회, 프롭 테크포럼 등
- 06 규모: 1천개 부스/관객 10만 명(2019년 8백개부스/ 8만8천 참석)  
※ 20년부터 우리협회가 주관사로 참여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정부와 여당,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 현안회의 개최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 현안회의(2019.12.16.)를 통해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에는 우리협회의 중점 추진사항인 공공분야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등 건설업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 공공공사(100억원 이상)의 하도급 경쟁입찰 시 입찰종료 후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을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토록 의무화(하도급법 개정)  
※ 벌점 경감 사유에 포함하여 자발적 정보공개 유도(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02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범위 확대
  - 중소기업 원사업자 부담 완화(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면제기준: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 → 45억원 미만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법 처벌 방지 기대
- 03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 하도급업체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사유를 정비(하도급법 시행령 등 개정)  
※ 입찰참가제한(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기업은 1년간 공정거래 협약평가 대상 제외, 하도급법 등 위반 기업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우수등급 원천 배제
- 04 상생결제 활성화
  - 공공부문의 상생결제 이용 활성화 추진(상생법 등 개정)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IMPORTANT**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보완대책 및 노무관리 지원  
제도 안내**

12

지난 2019.12.11. 정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급증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부산시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부 보완대책과 함께 회원사가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노무관리 지원제도를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주요 내용**

- 1년간 계도기간 부여(50~299인 기업, 처벌유예)
-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 업종별 특화 지원

**02 중소사업자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규모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 지원
-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시  
불법하도급 조사」 안내**

13

**임금체불 조사 중 불법하도급 적발시 관할 등록기관에 통보 →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제재처분 유의**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등록 시공업자 다단계 불법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2020.1.1. 시행)하고, 「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시달(2019.12.18)하였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관련 규정**

**제21조 (감독결과 조치)**

⑦ 사업장 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시  
불법하도급 조사」 안내**

13

**제37조의2 (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 ④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해당 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무등록 시공업자(속칭 '오아지', '십장' 등)가 사용자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등록기관에 통보하게 될 예정이다.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제109조 (벌칙)**

-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산시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불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지급토록 하여 임금체불 및 불법하도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01 불법 하도급 통보대상 및 절차**

**■ 통보대상**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진정)\* 처리과정에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불이행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 \* 고소·고발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모두 통보
- 시정지시를 이행(체불임금 지급)한 경우에는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재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이행(체불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통보될 수 있음.

**<유형별 통보 대상>**

- ① 고소·고발사건: 체불임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통보
- ② 진정사건·근로감독: 시정지시 이행 여부(체불임금 청산 여부)에 따라 통보대상 결정
  - 시정지시 이행: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되, 재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이행(체불임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통보될 수 있음을 조사 과정에서 고지
  - 시정지시 불이행: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형사 입건 이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통보

1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시 불법하도급 조사」 안내

■ 통보내용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조사 결과 확인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에 대해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직상수급인, 하수급인(무등록 시공업자) 현황, 위반내용(불법하도급)을 통보
- 통보시에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무등록 시공업자)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되, 하도급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

<세부 통보내용>

- ① 당사자: 직상수급인, 하수급인(무등록 시공업자) 현황
  - (직상수급인) 건설업체명, 건설업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소재지, 연락처
  - (하수급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 ② 계약내용: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무등록 시공업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현황
  - 발주자, 하도급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선금, 기성금) 등
- ③ 위반내용: 직상수급인은 무등록 시공업자인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 통보방법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조사가 종료된 이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즉시 서면으로 통보

■ 통보기관

- 종합공사 시공 건설업체: 광역자치단체(시·도)에 통보
- 전문공사 시공 건설업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통보

02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자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사항

■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하도급 준 건설사업자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4

2020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01 건강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8	보수월액 × 6.24%	3.12	3.12
2019	보수월액 × 6.46%	3.23	3.23
2020	보수월액 × 6.67%	3.335	3.335

- 2020년도 가입자부담 3.335%, 사용자부담 3.335%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0.25%(사용자 10.25%,근로자 10.25%씩 각각 부담)

02 국민연금료율

년 도	요 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8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2019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2020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 2020년도 가입자부담 4.5%, 사용자부담 4.5%씩 각각 부담

03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공동 부담)	16/1,000 (1.6%)	사용자부담 8/1,000(0.8%) 근로자부담 8/1,000(0.8%)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 (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 (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 (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 (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 전년과 동일

04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	년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건설공사(갑)	38	38	39	40.5	37.5 (출퇴근재해 1.5 포함)	37.3 (출퇴근재해 1.3 포함)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14

2020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05 노무비율(백분율)

사업종류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건설공사(갑)	27	27	(30)	(30)	(30)	27 (30)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06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설업 월평균임금	3,408,840원	3,588,357원	3,619,987원	3,906,885원	4,226,652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07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일급(8h)	월급(209h)
2017	6,470	51,760	1,352,230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2020	8,590	68,720	1,795,310

\* 최저임금은 2020.1.1 ~ 2020.12.31까지 적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 초과분]

14

2020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08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16	75억 7천 5백만원	757천원
2017	75억 7천 5백만원	812천원
2018	75억 7천 5백만원	945천원
2019	86억 8천 1백만원	1,048천원
2020	86억 8천 1백만원	1,048천원

\*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공공기관(3.4%), 민간기업(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09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비고
2016	0.6/1,000	0.04/1,000	
2017	0.6/1,000	0.03/1,000	
2018	0.6/1,000	0.03/1,000	
2019	0.6/1,000	0.03/1,000	
2020	0.6/1,000	0.03/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기준)

유권해석 01

건설기계지급보증서 발급 관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현장별보증서 발급요건은?

- ❗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이라 함) 제6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장별보증서 발급요건인 도급금액 1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5개월 초과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현장별보증서 발급대상이 되며, 산출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등의 기계경비 및 기타경비 등 세부항목에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11.13.

유권해석 02

부정당업자의 하도급 참여 가능여부

❓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내에 지방자치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한 공사건의 하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판례 01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 1.19.) 제2장 시설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인하며"별표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정성 평가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하도급업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만약 참여시킨다면 계약상대업체(원도급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하도급관리계획을 위반한 업체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9.1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보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에 따라 선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및 대금지급수단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제조합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어음지급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보증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사건의 위험성과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보증 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연장 등의 사유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추가보증신청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를 징수한 후 추가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건설공제조합이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면서 그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료만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자와 보증채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이행기일을 연장함으로써 보증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보증사고 발생의 위험이 확대된 경우까지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이 판매하는 보증상품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의 이행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보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규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약관 제3조 제2호를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까지만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도급의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및 대금지급수단(현금 또는 어음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제조합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정하면서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보증인에게 이러한 통지의무를 부담케 하는 취지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보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을 부당히 확대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보증인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증채권자가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면책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면책된다고 하는 위 약관조항은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까지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이유 없이 보증인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이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 하도급 분쟁 상담소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와 분쟁이 나면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야 할지, 소송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공정위를 가도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포기하기 일쑤다.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도급 분쟁 해법을 알아보자.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상담소

### 원도급업체 대여금 약정 요구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

전문건설업체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교육지원청 현장의 토공사와 철콘 공사를 수주받았다. A사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토사층으로 인해 토사량이 많고 지하수도 유출돼 공기가 지연됐다. 이에 설계도면에서도 변경됐다.

하지만 공기 지연에 따른 돌관공사 등으로 공사대금이 증가했는데도 B사는 증가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정률도 80%나 진행돼 A사도 공사를 계속해 마무리 짓고 싶지만, B사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어 자금난으로 노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건설노조까지 개입해 공사 현장을 봉쇄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중재로 일단 노무비를 반반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B사는 A사에 노무 비자로 주는 절반 금액에 대해 대여금 약정에 공중까지 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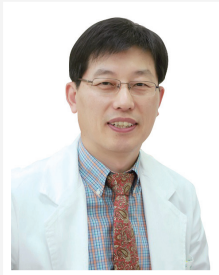
이 경우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대여금 약정에 공중을 서면 안 된다. 원래 노무비는 A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의 일부임에도 A사 스스로 공사대금임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추후 이 대여금 약정서 공중에 따라 가압류 및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공사대금은 공사대금대로 못 받고 오히려 대여금 채무자의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노무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극히 일부라도 노무비를 지급하는 성의를 보인 후 나머지 임금은 B사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해야 공격의 방향을 B사로 향하게 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하도급 대금 분쟁에 수수방관하면서 5:5 논리나 펴고 있다면 최근 하도급업체 보호라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처사로 그 관계자들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도급 분쟁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술로 인한 심각한 질환의 영상 소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양승우 주임과장

### 20대 젊은이의 췌장을 망가뜨린 습관적 음주

2020 경자년의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올해 첫 번째 <건강 코너>에서는 술로 인한 신체의 심각한 질환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는 질환에는 치매를 포함한 뇌 신경 질환과, 간경화, 간암과 식도암, 알코올성 췌장염 등이 있습니다. 술이 과소비되는 이즈음, 알코올성 질환의 첫 번째로 알코올성 췌장염의 사례를 CT(전산화단층촬영) 소견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L 씨(27)는 직업 탓에 거의 매일 음주를 해왔는데, 1년 9개월 전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미라아제와 리파아제 효소의 증가와 임상의 여러 증세로 췌장염이 진단되었습니다. 그림 1은 췌장(pancreas)의 정상 모습도와 정상인 CT 영상인데, 그림 2의 3년 전 영상은 L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복부 CT에서의 췌장 영상입니다. 그림 2의 1년 9개월 전 영상과 비교하여 아주 정상적인 췌장이었으나, 알코올성 췌장염에 의해 췌장 주위의 액체 저류와 췌장 실질의 저음영 병소가 보이는 염증 소견이 보이고, 최근 CT는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이 아주 위축된 양상입니다. L 씨는 처음 췌장염 진단을 받고도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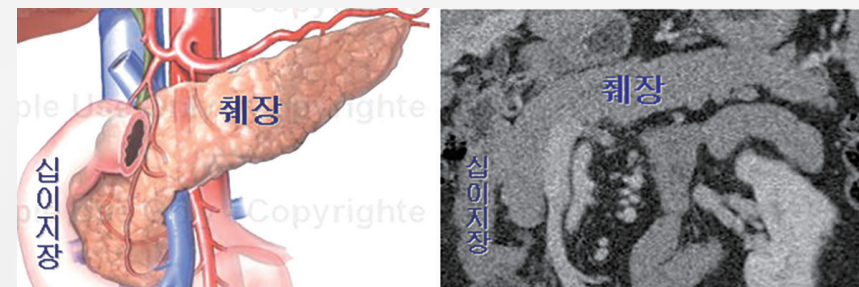


그림 1. 정상 췌장 모습도와 정상인(42세 남자)의 관상면 재구성 CT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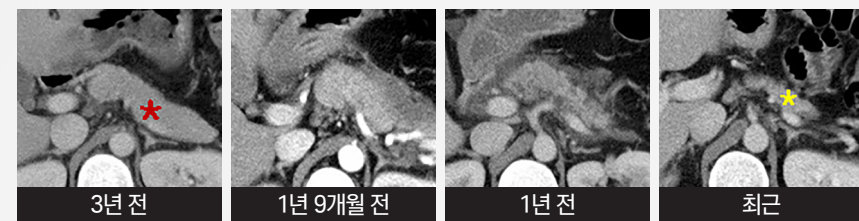


그림 2. 시간대로 본 축방향 CT 영상: L씨의 췌장 크기가 3년 전에는 정상이었으나(붉은 별표), 췌장염이 진단된 지 2년 만에 아주 심한 위축을 보이게 되어 만성 위축성 췌장염 상태(노란 별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일찍 음주 습관을 지닌 27살의 젊은 L 씨는 하루 한 병 이상의 소주를 거의 매일(1주일에 6회) 마신 음주력이 있으며, 췌장염으로 진단된 이후로 반복적이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심한 복통 탓에 매년 여러 차례의 입원과 매달 4번 이상의 양성 통증의 치료에 준하는 진통제 치료와 수반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어서, 주위의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통 완화를 위해 복부의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담도 결석, 복부 외상 등이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누적된 과음이 초래한 40대의 간암

새해부터는 자신의 생활 습관 잘못으로 건강을 잃는 사람이 줄어들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흔한데, 술로 인한 신체의 심각한 질환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은 41세에 간암으로 진단된 J 씨의 사례를 CT(전산화단층촬영)와 PET/CT(양전자방출 전산화영상술) 소견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 J 씨(41)는 황달이 2주 전부터 나타나서 개인병원에서 간염이나 폐쇄성 황달이 의심되어 내원하여 시행한 피검사에서 전체 빌리루빈치가 23mg/dL, CA 19-9와 알파태아단백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간의 병소가 의심되어 CT를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그림 3은 복부 CT의 간이 보이는 영상으로 CT 촬영에서 흔히 병변의 대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맥 주사로 높은 음영의 물질로 조영제라는 주사제를 사용하기 전과(왼쪽), 조영제를 주입한 후의 축방향 영상(가운데)과 관상면 재구성 CT인데, 간의 왼쪽 엽에 저음영의 불규칙한 조영 증강을 보이는 6cm의 종괴(화살표)가 간문맥의 혈전과 간 내 담도의 확장을 수반하고 있습니다(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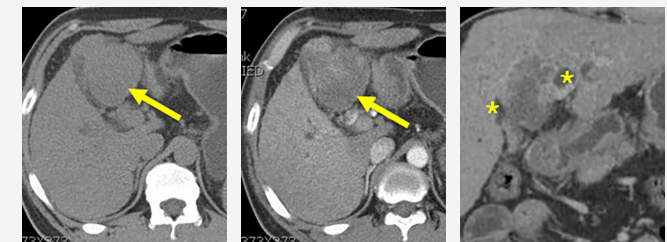


그림 3. J씨의 CT 소견: 왼쪽부터 조영제 주입 이전의 CT, 조영제 주입후의 동맥기 CT, 관상면 재구성 CT 영상입니다. 간의 왼쪽 엽(S4)에 저음영의 불규칙한 조영 증강을 보이는 6cm 가량의 종괴(화살표)가 보입니다.

먼저 보조 치료로서 J 씨의 황달을 완화하기 위한 담즙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간종양의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하여 PET/CT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림 4는 PET/CT로 간의 왼쪽 엽에 종괴가 붉은색으로 표준섭취계수(SUV) 8.4 이상을 보이는 영상입니다(화살표). 간종양 이외에 두뇌와 심장, 방광과 콩팥에 정상적인 F-18-FDG 방사성 동위원소 섭취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폐나 뼈 등으로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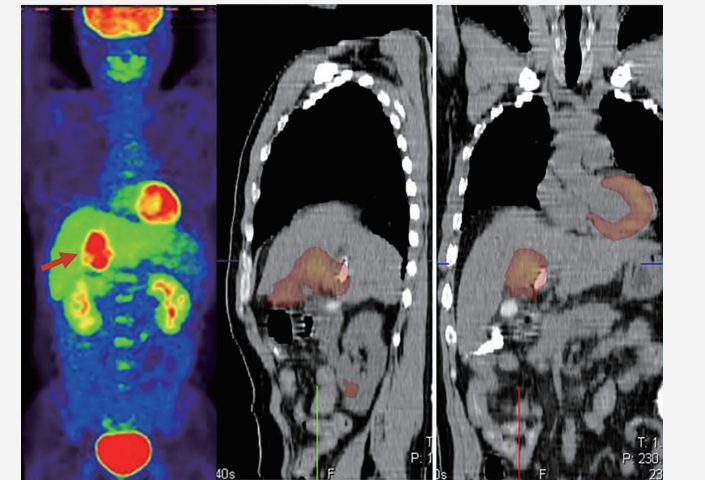


그림 4. 그림 4. PET/CT 영상: 왼쪽부터 MIP 컬러 영상, 시상면, 관상면 PET/CT영상으로 붉은 색의 간종양과 내부에 담즙배액을 위한 도관이 보입니다.

J 씨는 하루 3~4병의 소주를 거의 매일 마신 음주력이 있으며, 20살 때부터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이기도 한 J 씨는 수술이 어려운 위치의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어 화학요법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간암은 폐암, 위암과 함께 사망률이 높고, 그 원인은 간염, 가족력, 장기간의 음주, 곰팡이 독소(Aflatoxin), 경구 피임약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원인으로든 간경화가 있을 때 더욱 발병되기 쉽습니다.

하루에 두 잔 이내의 음주는 심혈관계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확실히 우리의 몸에 해로우므로 절제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술과 흡연에 대해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의 풍토가 남성 위주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정부에서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연과 적절한 음주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필수요소라는 하버드대학의 <그랜트 연구>를 믿는다면, 적절한 음주와 금연, 적절한 운동을 하여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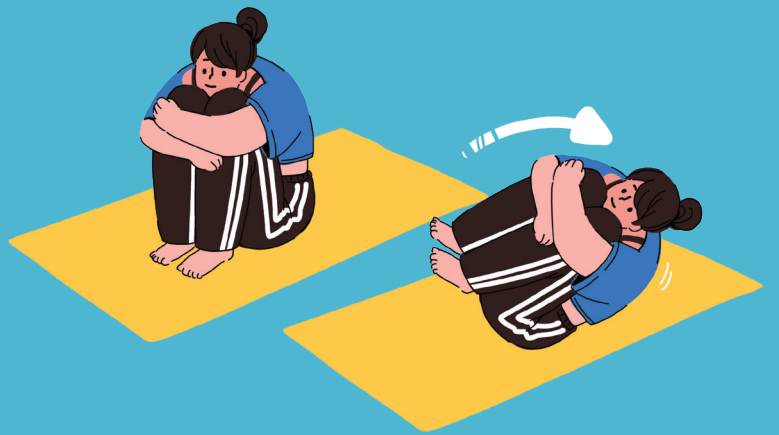
##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간단 스트레칭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오래 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푹 자고 쉬면 금세 회복이 되지만 생각이 많거나 걱정 근심이 많을 경우 마음의 피로가 육체적인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통해 피로를 날려버리자.



### ✔ 두 다리 앞으로 뺀고 상체 좌우 비틀기

- 1 두 발을 모아 앞으로 뺀고 발끝을 세운 뒤 목 뒤에 깍지를 끼고 앞으로 숙인다
- 2 이어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상체를 왼쪽으로 돌린다
- 3 다시 앞으로 숙였다가 몸을 세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튼다
- 4 서너 차례 반복한다



### ✔ 몸을 둥글게 말아 구르기

- 1 무릎을 굽혀 두 팔로 감싸 안고 목은 앞으로 숙인다
- 2 뒤로 넘어졌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구른다
- 3 구를 때 목을 옆으로 돌리면 안된다. 목 주위 근육이 다칠 수 있다
- 4 같은 동작을 10여 차례 반복한다

## 초기 진단으로 갑상선 건강 지키기

체온 유지, 대사기능 담당하는 '갑상선'

글 최명신



암은 언제 들더라도 항상 경각심이 들게 되는 단어다.  
그 이유는 암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 가장 방심하기 쉬운 암은 갑상선암일 것이다.  
완치율이 높은 만큼 방심하기도 쉬운 갑상선암 자가진단법과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자.

갑상선암은 전체 암 2위, 여성암 1위의 높은 빈도의 암이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3~4배의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지만 방심하기 쉽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과 같은 기타 암들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고 치료 성과 역시 좋기 때문이다. 실제로 갑상선암은 1기에 발견할 시 98%, 2기 85%, 3기 70%, 4기 50%의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며 1,2기 발견 시 100% 완치까지 가능하다. 그만큼 초기 진단의 중요성이 높은 질병이다. 그렇다면 암을 초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길 경우 갑상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가 검진은 어디까지나 비 의료적인 진단으로 병증을 추측할 뿐 정확한 진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증상 시 가장 먼저 병원을 내원하여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포 흡입 검사를 통하여 갑상선암의 확진이 가능하고 초음파검사로 크기 및 위치 확인을 한다. 그 후 CT 촬영을 통하여 림프절 전이 유무를 확인 후 치료가 시작된다. 갑상선암은 수술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수술 후 꾸준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여준다면 무리 없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이처럼 초기 발견한다면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모두 건강을 자신하기 보다 항상 질병을 경계하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 예방이다.

### 갑상선암의 자가진단과 초기 증상

- 01 **갑상선의 크기가 변하였다.**  
갑상선은 목의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 남자의 목젓과 비슷하여 헛갈릴 수 있으나 딱딱하지 않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 혹이나 결절 유무를 확인하여 갑상선암을 확인할 수 있다.
- 02 **목에 아픔을 느낀다.**  
갑상선암 세포가 확대되면서 주변 조직을 건드리는 경우 목에 이상이 생겨 아픔을 호소할 수 있다.
- 03 **원 목소리가 나거나 목소리가 바뀌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목소리가 쉬거나 달라지는 경우 갑상선 암을 의심할 수 있다.
- 04 **임파선이 예전보다 부풀었다.**  
암 조직이 갑상선을 벗어나 임파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암 조직이 움직이면 임파선이 부어오르고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 05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하다.**  
갑상선은 식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암이 발생 시 식도를 자극하여 음식물을 삼키는 데 불편함이 생긴다.



맛과 향에 반하다  
자연의 멋 가득한

# 꽃차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처럼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차 한 잔의 여유만 있으면 틈새 시간에도 힐링하며 마음의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취미가 있다. 바로 꽃차다.

글 최령신

## 자연이 내린 선물, 꽃차

꽃은 눈과 코는 물론 입까지도 즐겁게 만드는 식물이다. 꽃을 우려낸 차에는 여느 차와 비교할 수 없는 향과 맛이 있다. 더불어 입맛을 돋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기능성 성분도 풍부하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꽃차를 주제로 한 강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꽃차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주재료인 꽃이다. 씻지 않아도 깨끗한 꽃이 가장 좋다. 꽃은 씻으면 향이 줄고, 꽃가루가 씻겨 나간다. 꽃차에 사용하는 꽃은 30% 정도 피거나 부분 봉오리가 적당하다. 어린 꽃봉오리는 쓴맛이 나고, 활짝 핀 꽃은 꽃잎과 꽃가루가 잘 떨어져 번거로우며 효능도 줄어든다. 대신 꽃 음료를 만들 때는 활짝 핀 꽃이 좋다. 비맞은 꽃이나 이슬에 젖은 꽃은 물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만약 꽃을 씻어야 한다면 잠깐 동안만 씻는다.

## 꽃차 만들 때 주의점

꽃차는 어떻게 데치고 덫느냐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진다. 쓰임이나 목적에 따라 데치거나 덫는 방법을 달리하면 유용하다. 대체로 덫을 댄 꽃에 따라 저온에서 고온, 고온에서 중온, 중온에서 시작해 온도를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모양과 색이 중요한 꽃차는 팬, 찜기 등에 면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말리면서 수분을 뺀 다음 저온에서 시작해 온도를 조금씩 높이며 덫는다. 맛과 향이 중요한 꽃차는 중온 이상이나 고온에서 충분히 덫거나, 찜 다음 덫는다.

## 꽃차 보관법

꽃차는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유통기한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장마철에 눅눅해지는데,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필 수 있다. 처음부터 말려서 습기를 완전히 뺀 후 밀폐해 보관하거나, 가끔 꺼내 수분을 점검해야 한다. 수분 점검을 할 때 보관 용기의 뚜껑에 김이 서리면 다시 덫어서 수분을 뺀다. 햇볕이 닿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금물이다. 색이 변하고 성분이 바뀔 수 있다.








## 꽃차 마시는 법

꽃차는 취향에 따라 여러 번 우려 마시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꽃을 넣고 끓인 물(100°C)을 부어 첫물은 40초, 두물은 30초, 세물은 40초, 네물은 1분 정도 우려 마신다. 백목련 꽃차는 더 우려 마셔도 된다.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9.10.1. ~ 2019.12.31.

 (주)건양산업개발 부산시 동래구 여고로12번길 9, 2층 (사직동) T: 051-502-0885 보유업종: 지방판금·건축물조립 <b>소태수</b>	 서연개발(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108번길 28, 2층 (온천동) T: 051-502-8882 보유업종: 토공 <b>박세웅</b>	 (주)석비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1번길 80(반송동) T: 051-545-8975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 <b>석일용</b>
 (주)세영아이앤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37, 201호 (금곡동) T: 051-365-1990 보유업종: 습식방수 <b>조영웅</b>	 (주)아진글라스테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 38, 2층 (낙민동) T: 051-522-5179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b>천미경</b>	 (주)위너스건설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06, 2층 (덕천동) T: 051-913-9983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 <b>이정숙</b>
 (주)일주건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1102호 (모라동, 부산벤처타워) T: 051-304-3811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 <b>김덕철</b>		

○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9. 10. 01. ~ 2019. 12. 31.

지역	업체
전출 업체 현황	조이공영건설(주) (대표: 조미경, 인천)
	(주)한누리조경(대표: 정성웅, 대전)
	어울림건설(주)(대표: 이정하, 경기)
	(유)고려산업엔지니어링(대표: 이경애, 전북)
	남우건설(주)(대표자: 하익수, 경남)
	(주)다석토건(대표자: 김주남, 경남)
	(주)월드디자인건축(대표자: 김경희, 경남)
전입 업체 현황	(주)디에이치대호건설(대표: 안석진, 전남)
	(주)양주건설(대표: 양준호, 경남)
	태영환경(주)(대표: 하울, 경북)
	(주)태진토건(대표: 심홍보, 강원)
	태평엔지니어링(주)(대표: 최낙선, 경남)
창비토건(주)(대표: 장영순, 경기)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9.12.31.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 구	30	67
동 구	53	104
서 구	24	28
사 하 구	73	99
영 도 구	22	34
동 래 구	174	223
남 구	99	140
금 정 구	242	357
연 제 구	144	227
해운대구	233	322
수 영 구	112	170
부산진구	176	240
북 구	87	113
사 상 구	128	167
강 서 구	210	286
기 장 군	205	303
합 계	2,012	2,880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 시급 8,590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9년 최저 시급 8,350원에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작년 대비 2.9% 인상되었다. 최저시급 8,5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며, 최저시급은 주 40시간,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새 주민등록번호**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 번호를 포함해 13자리를 사용하지 않,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 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개편된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새롭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에 한해서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증처럼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올해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운전면허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도를 시행한 바 있었다.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시행 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제도 기간을 1년 부여하고, 제도 기간에는 주 52시간제도를 위반하더라도 단속되지 않는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관공서 휴일 기준이 적용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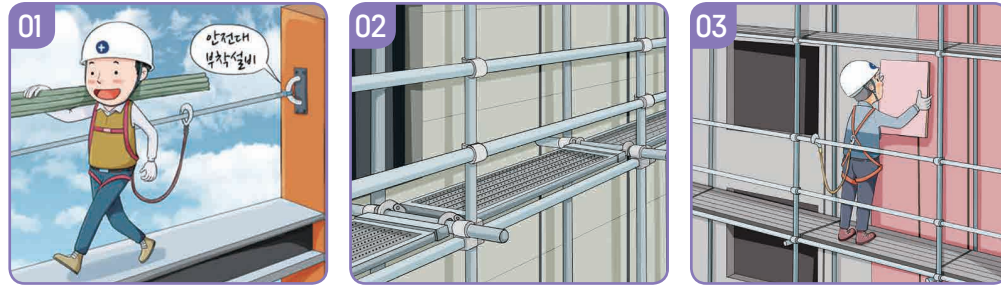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출처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실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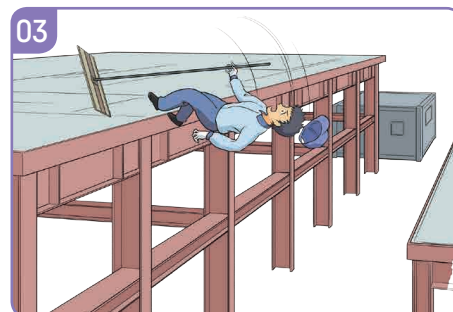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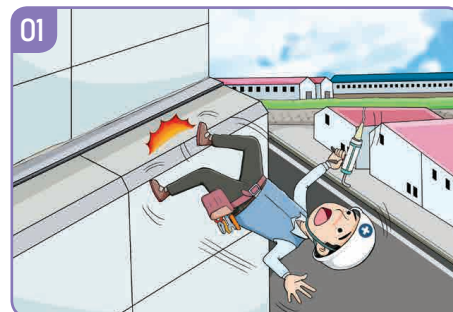
01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02 작업발판 설치      03 안전난간 설치

- ①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잠시라도!! 작업 금지
- ②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잠시라도!! 작업 금지
- ③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잠시라도!! 작업 금지

**주요 위험요인**

- 01 안전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고소작업을 실시하여 추락
- 02 고소작업대(스카이)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고소작업대 전면부위(안전난간 미설치)와 건물의 틈새로 추락
- 03 고소작업대(스카이) 등의 케이지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다 해당 케이지가 낙하하며 작업자가 추락
- 04 지붕 설치, 교체, 철거 작업 중 슬레이트를 밟아 슬레이트가 깨지며 추락
- 05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 중 달비계 섬유로프를 결속한 부위가 부식·파손되며 추락
- 06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인식하지 못하여 추락

**재해사례**



01 옥상 흉벽 위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9m 아래로 추락

옥상 누수방지를 위하여 흉벽위(너비 60cm)에 올라가 벌어진 틈새에 실리곤 코킹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자세 전환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02 지붕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가 채광판이 부서지며 14m 아래로 추락

공장 지붕교체공사 현장에서 투명 슬레이트 재질의 채광판을 밟아 채광판이 부서지며 높이 14m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03 슬래브 단부에서 면고르기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20m 아래로 추락

슬래브 단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뒷걸음질 치며 면 고르기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단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주요 점검항목**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 ① 비계와 같은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②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③ 안전대 부착설비가 있는가?

지붕 위에서 작업

- ① 폭 30cm 이상의 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 ②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고정하는가?
- ③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개구부 또는 단부 등 추락위험

- ① 개구부 덮개가 있는가?
- ②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 2019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부산시회 201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는 2019.2.17.(월)까지 방문 및 인터넷 접수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의 경우 2020.4.16.(목)까지(개인의 경우 2020.6.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접수 바람.

- 2019년 실적신고는 2019.12.31.(화)일 기준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함.

### 주의사항

- 01 실적신고는 반드시 우리 협회 실적시스템(<http://esingo.kosca.or.kr>)으로 작성·제출(수기제출 불가)
- 02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의 제출기한은 2020년 2월 17일까지임. 단, 재무제표에 한하여 2020년 4월 16일까지(개인업체 6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 불가
- 03 2019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실적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04 신고기간내에 접수한 내용(공사실적, 재무제표, 기술인 등) 이외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접수기한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05 기성실적증명서【서식6-1】는 실적증명자(발주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정보(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주소)가 누락 없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됨.
- 06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원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결산재무제표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건설공사 매출과 기타겸업 매출액으로 구분기장되어 있어야 함.

※ 종합·전문건설업 겸업업체 등 재무제표 자료 공동 활용

재무제표 신고 일원화 대상 협회	
겸업업체	제출처
종합, 전문 겸업 업체	대한건설협회
전문과 기계설비, 시설물 겸업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와 시설물 겸업업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제출처 외의 공동활용 협회에는 자료 제출 불필요

- 07 보유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되 반드시 (하)도급 받은 건설업종으로 건설공사실적을 건별 입력(기재)해야 함.
- 08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는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실적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절차

#### 01 강습회 실시

- 2019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2019. 12. 13(금)
- 실적신고 작성안내서 수령

#### 02 실적신고서 온라인 작성

- 실적신고작성안내서 숙지
- 실적신고서 시스템 로그인(<http://esingo.kosca.or.kr>)
- 실적신고 자료 입력(업체현황, 공사실적, 기술능력, 신인도, 통계조사항목)

#### 03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공사실적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기성실적증명서 확인(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기술능력평가 증빙서류 준비
  - 건설기술인자격증 사본(기능사),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등
  - 고용보험/국민연금/서류 등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필) 준비
  - 기술개발투자비지출확인서 등
- 신인도평가 증빙서류
  -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업체

#### 04 신고서류 출력 및 접수

- 실적신고서류 출력 및 편철
- 각종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및 미비서류 유무 확인, 납부 할 회비 확인
- 협회 실적신고
  - 공사실적: 2020년 2월 17(월)까지
  - \* 인터넷 신고 서류제출: 방문 또는 우편 2020년 2월 17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재무제표: 2020년 4월 16일(단, 개인업체는 2020년 6월 1일까지)

#### 05 공사실적 확정

- 공사실적 확정 및 증명발급: 2020년 7월 1일(수)

#### 06 2020년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2020년 7월말(예정) (공시방법: 협회 정보통신망)
-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2020년 8월 3일(월)부터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01 중앙회 김영윤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유관기관들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전문건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12일 국토교통부의 「제7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주최한 「2019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송년 연찬회」도 함께하는 등 건설인들과의 스킨십을 늘려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 02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2월 4일 건설산업의 발전과 원하도급 상생 문화 마련, 산업혁신 추진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9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 03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0월 2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후원금(증서) 전달식」을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피해자 7명에 4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01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12월 3일 「2019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상생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건설의 날 대통령 표창에 이어 국내 최고 경영컨설팅기관인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우수한 경영성과를 또다시 인정받음으로써 조합원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한 조합의 상생경영 노력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02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오는 2020년에도 수수료 인하와 이익 환원을 통해 조합원과의 상생경영 실천에 더욱 힘써나갈 전망이다.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보증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전 조합원은 모든 보증 상품에 대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되며, 조합 최우수 신용등급(AAA)인 조합원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보증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부터 보증 사고율 등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원도급공사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하고, 건설행 개정예 따라 2019년 6월부터 의무 발급 대상이 된 전장별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 수수료도 30%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우수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할인 폭이 최대 65%까지 확대될 수 있어 의무발급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시회 2020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2020년 2월 4일(화)	제35회 정기총회
2020년 2월 3일(월)~ 2월 17일(월)	실적신고(1차) 접수
2020년 3월 중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예정)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예정)
2020년 4월 16일(목)	실적신고(2차) 재무제표 제출 ※개인업체는 6. 1(월)까지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 (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정건설  
**박희란** 과장

협회에서 보내주시는 코스카레터를 통해 변경된 건설 관련 정보나 여러 유권해석 및 판례들을 접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도 얻고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코스카레터가 되길 바랍니다.



(주)한대건설  
**이옥영** 부장

계속 변화하는 건설산업정보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협회에서 팩스로 보내주지만 바빠서 건설산업정보 변경내용을 정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카레터에서 건설산업정보 변경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덕분에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협회와 코스카레터 응원하겠습니다!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강일개발(주) **이청아** 대리  
-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재홍** 과장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 300만원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고용노동부에서 2019.12.13.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를 개정·고시 했다. 이번 개정된 동 고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를 현행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에서 얼마 이상으로 확대하였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2020.2.28.(금)**까지)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명)

# 2020년부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등에 우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6]

- **신청대상**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
- **신청기간** 매년 4월 1일 ~ 4월 15일
- **서류접수처** 건설업 등록업종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종합/전문 겸업업체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제출
- **제출서류** 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전년도, 전전년도) \* 시행규칙[별지 제 25호의2서식]
- **평가방법**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1~3등급 부여  
고용평가는 정규직비율, 신규 정규직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
- **평가해택** 우수업체의 경우, 매년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5% 가산(2021년부터)
- **결과공표** 매년 6월말 (관련협회 홈페이지) \* 2020년 평가는 8월 말 공표예정

### 0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6]

-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 ✓ **해당년도 고용평가**  
=  $\left( \frac{\text{정규직수}}{\text{전체건설근로자수}} \right) + \left( \frac{\text{신규정규직수}}{\text{정규직수}} \times 0.1 \right) + \left( \frac{\text{청년신규정규직수}}{\text{신규정규직수}} \times 0.1 \right)$

### 0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 가산비율

\* 종합건설업체 전체, 전문건설업체 전체 단위별로 등급 부여

고용평가대상	고용평가등급	등급배분기준	가산비율
종합, 전문 건설업체	1등급	상위 30%미만	5/100
	2등급	상위 30%이상부터 상위 70%미만	4/100
	3등급	상위 70%이상	3/100

### 0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지 우대사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100 가산

-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받은 건설사업자
- **현장 편의시설 설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
-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  
「근로복지기금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근로복지기금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